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김민영 · 이소영



## 참여연구진

저 자 김민영, 이소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요약

## 1. 연구개요

### □ 연구배경

- 2021~2022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지정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종합적으로 추진됨
- 관심지역까지 재정 및 특례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 □ 연구목적

- 관심지역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마련함
- 인구감소지역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재정립함
- 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함

### □ 연구방법

-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조사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현황과 인구감소지역의 행·재정 지원체계를 정리하고, 뉴스기사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을 검토하여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를 조사함
- 통계분석을 통해 관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함
-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해외에서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할 요소를 도출함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심지역 선정 기준과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함

| 그림 1 | 연구흐름도



## 2. 주요 연구내용

### 1)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 □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는 ‘행정 지원’, ‘재정 지원’, ‘정보·인재 지원’ 등 세 측면으로 구분됨

| 표 1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구분	지원내용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li> <li>•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li> <li>•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li> <li>• 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li> </ul>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 지원</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li> <li>•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li> </ul>
정보·인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제공</li> </ul>	

##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사업 현황

-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나라살림 브리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통해 관심지역의 대응 계획과 자체 발굴 사업을 분석함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고 관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에 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관심지역 내용을 검토함
-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5개 사업을 추진 하며, 일부 시·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관심지역에도 투입하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시사점

-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현행 지원체계에 관심지역을 통합해야 함
  -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지원체계에 통합하여 준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함
  - 기본계획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 발굴로 단기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시·군·구 단위를 넘어선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광역 단위 비전 제시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조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 각 지역의 차별화된 경제 성장 전략 수립, 생활서비스 기능 분담 전략 수립,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 댐 설정 등을 담당하며, 중장기적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2)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

### □ 조사 개요

- 한국과 비슷한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배경’, ‘행정 지원’, ‘정보·재정·인재 지원’ 등 측면에서 조사함

【표 2】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배경	• 인구감소 현황	• 정부 대응 과정
행정 지원	• 법률적 근거 • 추진 조직체계	•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
정보·재정·인재 지원	• 정보 지원 • 인재 지원	• 재정 지원

### □ 시사점

- 한국은 일본과 대만처럼 다양한 권역 형성과 상향식 사업 제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 한국은 일본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담당함
  - 일본과 대만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조정기구를 설립해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의 전략 수립 방식과 지역 지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
  - 한국은 연계·협력 방향을 강제하지 않고, 일본은 다양한 권역 형성을 지원하며, 대만은 상향식으로 지방창생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
- 한국은 일본의 ‘지방창생 응원세제’와 대만의 벤처 자본 활성화 및 신용 보증 제공 방식을 도입해 재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한국, 일본, 대만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한 사업과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해 재정 지원 체계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감소지역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창생 응원세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 자본 활성화와 신용 보증 제공 같은 대만의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제공, 과제 도출 및 정책 검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기본적인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과 대만은 종합적인 데이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도 전문가 컨설팅 외에 인재 파견, 자원 매칭, 대학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재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일본과 대만은 인력 파견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3)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선정 기준 마련

#### □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이 아닌, 인구가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인구소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관심지역을 확대 지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현재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만 배분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기 전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행·재정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로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인구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거나 청년층이 유출된 지역이 있음
- 인구감소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정책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관심지역을 확대 지정할 경우 한정된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을 세 가지 마련함
  - 대안 1은 인구감소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지역 수를 미리 정할 수 없음
  - 대안 2는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정한 후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해, 재정 지원의 한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유사한 여건의 지역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안 3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지역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해, 재정 지원 이유를 반영할 수 있지만 추가 지표를 활용해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음
- 한편, 인구감소지역 수의 약 20%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음

## 4)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 방안 제안

### □ 기본방향

-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개별 시·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 시·군·구와 연계한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히,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이 필요함
  - 관심지역은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있으나, 인구규모, 주야간 인구 비율, 인근 지역과의 관계성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연계한 발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현재 관심지역에서는 소액 기금사업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인구 유출 방지 댐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관심지역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 □ 제도 개편 방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안을 제안함
  - 관심지역 지정은 인구감소지역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준용하여 인구감소 지수를 근거로 인구감소 위기가 높은 지역 순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기준을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 등에 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지역 간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는 안을 제안함
  - 대도시,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심지역도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관심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개별법 및 관계 행정 기관장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관심지역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 특례 부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차이를 인정하여 각각에 맞는 차등적인 특례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1. 연구범위 .....	6
2. 연구방법 .....	7

## 제 2 장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제1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	11
1. 조사 개요 .....	11
2. 행정 지원 .....	12
3. 재정 지원 .....	21
4. 정보·인재 지원 .....	28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사업 현황 .....	29
1. 분석 개요 .....	29
2. 분석 결과 .....	32
제3절 시사점 .....	58
1. 현행 지원체계에 관심지역 통합 필요 .....	58
2.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 구체화 .....	59

### 제 3 장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	63
제2절 일본 .....	65
1. 배경 .....	65
2. 행정 지원 .....	69
3. 정보·재정·인재 지원 .....	92
제3절 대만 .....	97
1. 배경 .....	97
2. 행정 지원 .....	99
3. 정보·재정·인재 지원 .....	108
제4절 소결 .....	110
1. 행정 지원 .....	110
2. 재정 지원 .....	112
3. 정보 지원 .....	114
4. 인재 지원 .....	114

### 제 4 장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선정 기준 마련

제1절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및 지원 필요성 .....	117
1.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	117
2.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	120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121
1. 분석 개요 .....	121
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로 본 지역 현황 .....	123
3.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로 본 지역 현황 .....	126
4. 분석결과 종합 .....	134

제3절 관심지역 선정 방향 및 기준(안)	136
1. 관심지역 선정 방향	136
2.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137
3.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결과	138
제4절 소결	144
1.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144
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144
3.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145

## 제 5 장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 방안 제안

제1절 기본방향	149
1. 중위중심지로서 관심지역 지원	149
2. 관심지역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150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연계 지원 전략	151
1. 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151
2. 관심지역 행·재정적 지원 방안	153
제3절 제도 개편 방안	158
1. 관심지역 지정 방안	158
2. 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160
3. 관심지역 특례 부여 방안	164
<b>【참고문헌】</b>	<b>169</b>

## 표 목차

표 2-1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	11
표 2-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	12
표 2-3   관심지역 지정 결과 .....	13
표 2-4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4
표 2-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17
표 2-6   지역활력타운 지원내용 .....	20
표 2-7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지원내용 .....	21
표 2-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현황 .....	24
표 2-9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기금 배정 대상 여부 .....	31
표 2-10   부산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34
표 2-11   부산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34
표 2-12   인천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37
표 2-13   인천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37
표 2-14   경기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40
표 2-15   경기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40
표 2-16   경상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43
표 2-17   경상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45
표 2-18   경상남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47
표 2-19   경상남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48
표 2-20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50
표 2-21   강원특별자치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52
표 2-22   전라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	55
표 2-23   전라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	57
표 2-24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대상 지역 .....	58
표 3-1   사례조사 후보 국가 개요 .....	64

표 3-2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내용 .....	64
표 3-3   과소법 변천 과정 .....	74
표 3-4   과소지역 유형 및 요건 .....	76
표 3-5   전부과소 시정촌 일반 현황 .....	82
표 3-6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기본목표 및 주요시책 .....	86
표 3-7   일본 지방창생 지역 간 연계사업 개요 .....	88
표 3-8   일본 지방창생 관련 지역 데이터 활용 촉진 시스템 .....	92
표 3-9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 유형 .....	93
표 3-10   지방 거점 강화 세제 유형별 대상 및 지원내용 .....	95
표 3-11   일본 및 대만 사례 조사결과 비교 .....	110
표 4-1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 산출식 .....	121
표 4-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	123
표 4-3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관심지역 현황 .....	124
표 4-4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그 외 지역 현황 .....	125
표 4-5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	126
표 4-6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	127
표 4-7   지역 유형별 유소년 인구비율 .....	128
표 4-8   지역 유형별 고령화 비율 .....	129
표 4-9   지역 유형별 조출생률 .....	130
표 4-10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 .....	131
표 4-11   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	132
표 4-12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	133
표 4-13   지역 유형별 주간인구 .....	134
표 4-14   관심지역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예산 및 배정액 .....	140
표 4-15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	141
표 4-16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특성 및 결과 .....	146
표 5-1   관심지역에 대한 보육·교육 분야 특례 적용 여부 .....	154
표 5-2   관심지역에 대한 의료 분야 특례 적용 여부 .....	155
표 5-3   관심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분야 특례 적용 여부 .....	156

표 5-4	관심지역에 대한 문화·외국인·노후시설·산업단지 분야 특례 적용 여부	157
표 5-5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59
표 5-6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60
표 5-7	인구감소관심지역 책무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61
표 5-8	인구감소관심지역 계획수립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62
표 5-9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64
표 5-10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65
표 5-11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66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	8
그림 2-1   제1차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	16
그림 2-2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	19
그림 2-3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세부 구조(안) .....	26
그림 2-4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33
그림 2-5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36
그림 2-6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39
그림 2-7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42
그림 2-8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46
그림 2-9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49
그림 2-10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53
그림 2-11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공간 구상 .....	54
그림 3-1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목표 .....	67
그림 3-2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목표 .....	68
그림 3-3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추진 구조 .....	69
그림 3-4   과소 관계 시정촌 분포도 .....	81
그림 3-5   과소지역 방침 및 계획 책정 흐름도 .....	82
그림 3-6   다양한 '권역' 만들기 계획 .....	87
그림 3-7   취약생활권과 작은 거점 개념도 .....	89
그림 3-8   정주자립권 개념도 .....	90
그림 3-9   연계중추도시권 개념도 .....	91
그림 3-10   지방창생 인재지원 제도 개념도 .....	96
그림 3-11   대만 지방창생 비전, 목표, 발전전략 .....	100
그림 3-12   대만 지방창생 실행전략 .....	102
그림 3-13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 지도 .....	106

그림 3-14   지방창생사업 제안 과정 .....	107
그림 4-1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2023년 2월) .....	118
그림 4-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	123
그림 4-3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별 관심지역 현황 .....	124
그림 4-4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그 외 지역 현황 .....	125
그림 4-5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	126
그림 4-6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	127
그림 4-7   지역 유형별 유소년 인구비율 .....	128
그림 4-8   지역 유형별 고령화 비율 .....	129
그림 4-9   지역 유형별 조출생률 .....	130
그림 4-10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 .....	131
그림 4-11   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	132
그림 4-12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	133
그림 4-13   지역 유형별 중간인구 .....	134
그림 4-14   인구감소지수의 이론적 틀 .....	136
그림 4-15   첫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139
그림 4-16   두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141
그림 4-17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 .....	142
그림 4-18   세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143
그림 5-1   대도시-중소도시-인구감소지역 위계별 연계구조 .....	149
그림 5-2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간 상호 연계방안 .....	152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01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021~2022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 법률상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舊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정의됨
    -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를 통해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2022년 2월 10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3호) 제2조 제3호 관심지역 정의에 따라 18개 시·군·구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 추진
  - 2022년 6월 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규정하고 행·재정 지원사항을 제시함

- 동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지방교부세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청년·중장년 등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보육기반, 교육기반, 의료기반, 주거·교통기반, 문화기반 등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까지 재정 및 특례 지원 확대 필요성 대두**

-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행·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동법에서 관심지역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3호)에 따라 기초지원계정을 배분받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 연구목적

□ **관심지역이라는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관심지역 대상 정책수단 마련**

- 본 연구는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심지역’이라는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심지역 대상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감소지역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심지역 지정 기준 재정립**

-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하나 향후 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지역 혹은 일부 문제를 개선하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관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관심지역 지원하려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춘 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새로 수립함

□ **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 제시**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 안에서 관심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지역 대상 행·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지방 대도시권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함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 공간 범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을 대상으로 함

#### □ 시간 범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8개가 계산된 기간을 연구의 시간 범위로 함

#### □ 내용 범위

- 한국과 비슷한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경험한 해외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조사함
  - 일본과 대만 사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으며,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 현행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진단함
  - 행정안전부 공식 문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현행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정책 목표를 파악함
  - 특히,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 이를 통해, 현행 정책에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조사하고 한계점을 진단함
-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를 검토하고 지원 필요성을 정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관심지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함
  -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관심지역을 확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함



- 이러한 정책의제에 따라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을 정립한 후 관심지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법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를 활용한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을 마련함
- 앞선 조사한 현행 정책 진단 결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해외사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심지역 대상 정책수단을 제안함
  - 첫째,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증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특례 확대 등)을 제안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안함
  - 셋째,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대도시권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심지역 선정 기준과 정책수단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함

## 2. 연구방법

### □ 문헌조사

-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행·재정 지원체계 현황을 정리함
- 뉴스기사, 국회의원 발의법률안을 검토하여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를 조사함

### □ 통계분석

- 통계분석을 통해 관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함

### □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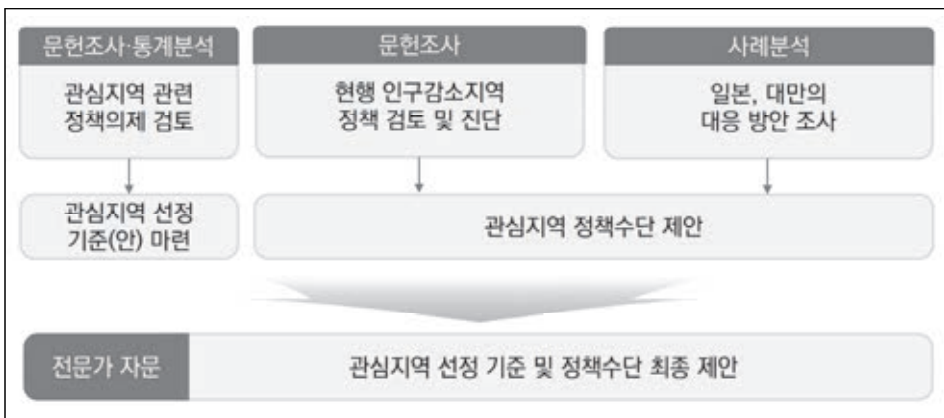
- 일본과 대만 사례를 분석하여 해외에서는 일찍이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함

-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지,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함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심지역 선정 기준과 정책수단이 적절한지 검토함

|그림 1-1| 연구흐름도



# 제 2 장

##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제1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사업 현황

제3절 시사점



# 02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 제1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 1. 조사 개요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를 ‘행정 지원’, ‘재정 지원’, ‘정보·인재 지원’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행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대응 기본계획 수립, 특례 운영, 지역 간 협력 지원, 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 등이 있음
  - 재정 지원으로 지방교부세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이 있음
  - 정보·인재 지원으로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이 있음

[표 2-1]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구분	지원내용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li> <li>•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li> <li>•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li> <li>•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li> <li>• 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li> </ul>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 지원</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li> <li>•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li> <li>•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li> </ul>
정보·인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제공</li> </ul>

## 2. 행정 지원

###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함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이에 근거해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음

표 2-2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광역시·도	시·군·구
부산(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반면, 관심지역은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된 바가 없으며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 정의·지정되고 있음

-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정의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제2조)
- 2022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89개의 20% 내외인 18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됨

| 표 2-3 | 관심지역 지정 결과

광역시·도	시·군·구
부산(2개)	금정구, 중구
인천(1개)	동구
광주(1개)	동구
대전(3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2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1개)	익산시
경북(2개)	경주시, 김천시
경남(2개)	사천시, 통영시

출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의 별표 1

##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와 관할 시·도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우는 5개년 중기계획임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해야 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8조)
  - 계획 수립권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고,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상향식 수립 체계를 갖추고 있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 [표 2-4]와 같이 지역 여건 분석, 인구감소대응 기본구상 및 전략, 중점과제, 추진체계, 자원조달, 투자계획 등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2-4]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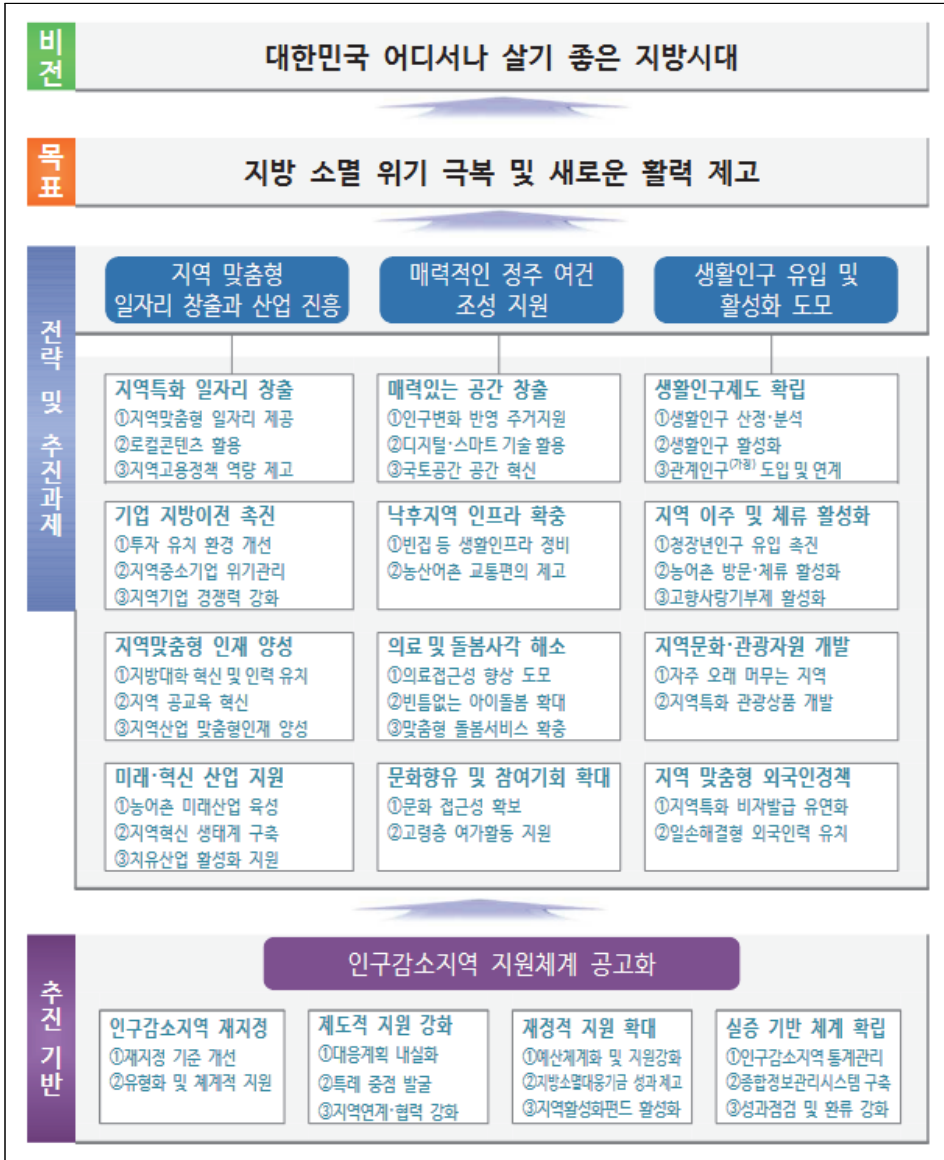
구분	시·군·구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	국가 기본계획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li> <li>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li> <li>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 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li> <li>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li> <li>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li> <li>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li> <li>8. 시·군·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li> <li>2.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li> <li>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li> <li>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군·구 간 생활권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제15조에 따른 시·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li> <li>7. 시·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li> <li>2.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li> <li>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li> <li>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7.10.] 제6조~제8조



- 제1차 계획은 2022~2026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며 2023년에 수립됨
  - 제1차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5년)와 일치하도록 계획기간이 2022~2026년으로 설정됨
  - 2023년까지 89개 인구감소 시·군·구 기본계획(2022~2026년) 및 시행계획(2023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11개 시·도 기본계획(2022~2026년) 및 시행계획(2023년), 국가 기본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
-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 제1차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함
  -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하며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3대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을 제시함
  -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그림 2-1 | 제1차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부터 제28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산업단지 등 분야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표 2-5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분야	주체	특례사항
보육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적 설치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교육	교육감	유치원, 학교 시설·설비·교육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교육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분교를 폐교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시·군·구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 가능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교육감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교육감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및 시설·설비 확보 등에 필요한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하여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분야	주체	특례사항
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
	시·도지사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주거·교통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문화	-	인구감소지역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외국인	문체부장관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법무부장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
노후·유희 시설	법무부장관	민원업무처리 접근성 보장, 사회통합 교육·지원, 내국인·외국인 상호이해 증진 등 시책 강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
산업단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 상태 등 관리 실태 주기적 점검
	지방자치단체	노후·유희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 확대 가능
산업단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임대료 감면, 판로개척,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고용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가능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7.10.)

□ 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

○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 2023년부터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교육부(2024년 추가), 중기부 등)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함
-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임

| 그림 2-2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출처: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대상, 타운조성방식, 주택유형, 생활서비스 등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함

**| 표 2-6 | 지역활력타운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부처의 검토를 거쳐 확정
인·허가 특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도시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의제 처리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출처: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 2023년 공모를 통해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음
-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착·육성정책 마련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 13개 시·도(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관할 시·도로 서울, 울산, 세종, 제주 등 제외), 107개 시·군·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기획하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함
- 한 예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여 창업센터를 건립하여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 교육 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청년전용창업용자 지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청년기업 초기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음

| 표 2-7 |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지원내용

부처	내용	비고
중기부	'24년 투자계획서(지역중기혁신과제) 중기부 협약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2점 배점
	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사업(참고 2) 우대 지원	정책사업별 가점 및 우대 지원 (단, 24년 예산 확보 등 부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4년 투자계획서 세부실행방안 수립 지원 (①공모 준비 사전 기획지원 가이드) (②선정 지방자치단체 대상 전문가 워킹 그룹운영 지원)	지역혁신 기획 지원 (중진공)
	지역별 맞춤형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구축 및 운영)	지역혁신 실행 지원 (중진공)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배분(가점 2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고려 (연계항목 평가 우대)

출처: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403호)

### 3. 재정 지원

####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원

- 2022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함(「지방교부세법」 제6조)
  - 기준재정수입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을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을 말함(「지방교부세법」 제2조)
  - 2021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방안을 마련함
  -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대응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 이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음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

- 2023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5%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받을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국고보조율 5%p 상향 가능하며, 인구감소지역과 성장촉진 지역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최대 10%p 상향할 수 있음

####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임
  - 2022~2031년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으로 매년 1조 원 규모로 기금이 조성되며(2022년 7,500만 원),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됨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용되고 있음



- 2021년 12월에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간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도입되었음
-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 관련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운용됨(동법 제24조)
  -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평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멸대응 관련 목적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과 시·도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이 구분되어 있음
  - 광역지원계정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지원계정 재원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
  -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투자계획을 제출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기초지원계정을 차등 배분받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수, 재정, 인구여건 등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을 정액 배분받음
  -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최종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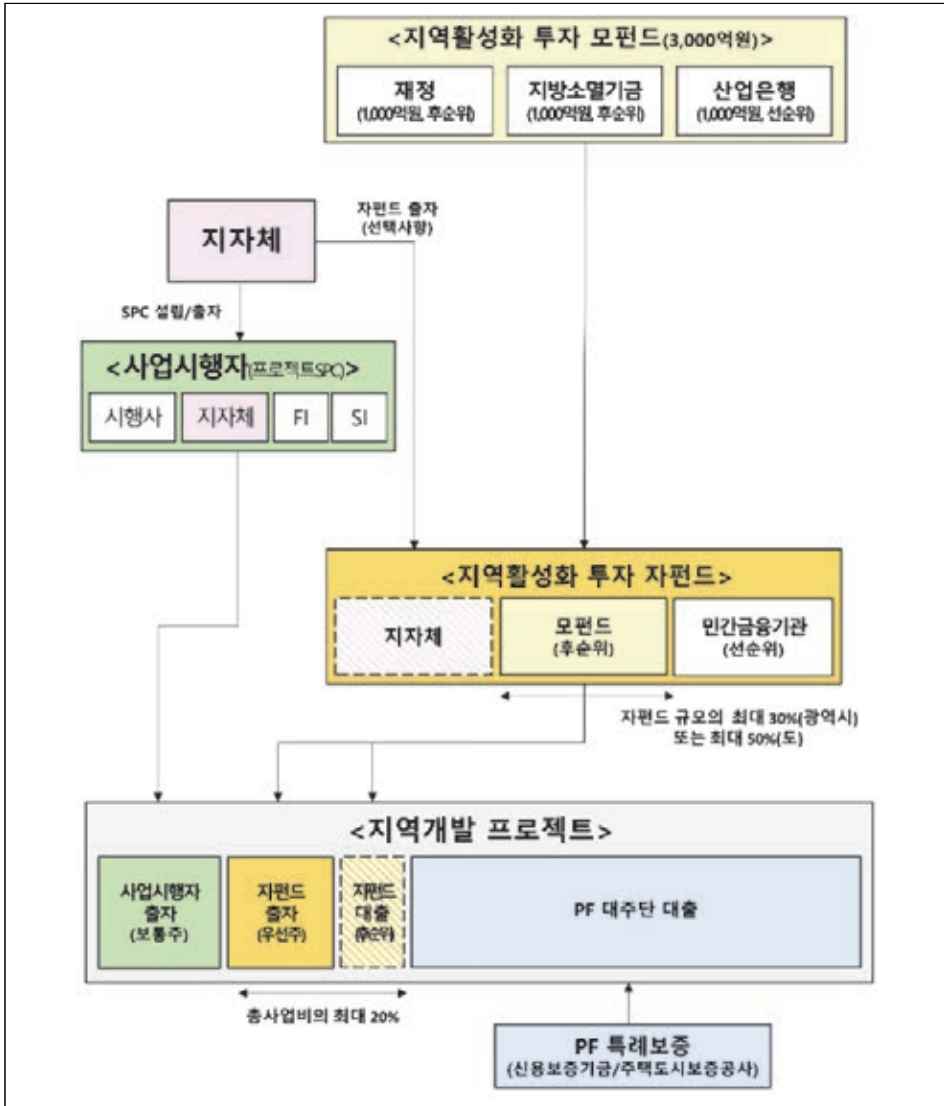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5개)
	2022년		
전체 예산	7,500억 원의 75% (5,625억 원)		7,500억 원의 25% (1,875억 원)
	기초지원계정의 95% (5,343.75억 원)	기초지원계정의 5% (281.25억 원)	
배분 금액	48~90억 원	12~23억 원	4~378억 원
구분	2023년		
전체 예산	1조 원의 75% (7,500억 원)		1조 원의 25% (2,500억 원)
	기초지원계정의 95% (7,125억 원)	기초지원계정의 5% (375억 원)	
배분 금액	64~120억 원	16~30억 원	5~505억 원
구분	2024년		
전체 예산	1조 원의 75%(7,500억 원)		1,500억 원
	기초지원계정의 95% (7,125억 원)	기초지원계정의 5% (375억 원)	
배분 금액	64~144억 원	16~36억 원	3~306억 원

주: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예외적으로 7,500억 원이 조성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2024년 1월에 개정하면서 2024년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모펀드에 출자함  
 2022~2023년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등급을 A, B, C, D, E 등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2024년 S, A, B, C 등 4등급으로 바뀜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

-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족, 지방재정 여건 등 제약으로 인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필요성이 제기됨(관계부처 합동 2023)
  -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단발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하향식으로 집행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도 엄밀한 사업성 검증 없이 추진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함
- 2024년부터 민간 재원과 연계하여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함
  - 2023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이 확정되고, 8월에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됨
  - 이에 따르면, 2024년 모펀드에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며, 정부자금인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함
  - 총 사업비는 약 3조 원(사업 15개 × 사업당 2,000억 원)으로 총 사업비 기준 최소 10배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있음
- 특정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자펀드를 결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하여 민간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프로젝트 펀드\*로 결성됨
  - \* 프로젝트 펀드는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함

[그림 2-3]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세부 구조(안)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3.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함

-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사업주체로서 직접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함
- 공공부문은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등 출자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결성함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를 지원함

○ 2024년 1월 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펀드를 선정함

####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함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음
    - 광역시나 중규모도시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7년(100% 감면)에 추가로 3년(50% 감면)
    - 그 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10년(100% 감면)에 추가로 2년(50% 감면)
-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함
  - 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4. 정보·인재 지원

##### □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

-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하여 지역 역량강화를 지원함
- 2023년 7개 인구감소지역(단양, 보령, 철원, 영암, 영천, 고창, 거창)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2024년에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24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 지표와 89개 인구감소 지역 유형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제공

-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사업 현황

### 1. 분석 개요

#### □ 분석목적

-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시·도에서는 관심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를 분석함
  - 특히,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봄
- 나라살림 브리핑에서 공개한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통해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을 분석함

#### □ 분석자료

- 관심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로 사업 내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임
- 따라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과 나라살림 브리핑에서 공개한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관심지역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내용은 '계획의 개요', '계획수립의 내용', '기본 구상', '전략별 계획',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순으로 구성됨
  - 주로 계획수립의 내용 중 지역 현황 분석이나 전략별 계획에서 관심지역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수 있음
  -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상향식 법정계획이어서, 시·도 기본계획에 관심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자율임

## □ 시·도별 현황

- 시·도별 관할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여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여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배정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표 2-9]는 시·도별 관할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여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여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배정 대상 여부를 나타냄
- 서울, 세종 등 2개 시·도는 관할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이 없어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배정 대상도 아님
-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는 관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있고,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배정 대상임
- 대구, 충북,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는 관할 인구감소지역만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배정 대상임
- 대전, 광주 등 2개 시·도는 관할 관심지역만 있어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을 배정받고 있음
- 울산, 제주 등 2개 시·도는 관할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이 없어서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을 배정받고 있음



| 표 2-9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기금 배정 대상 여부

시·도	관할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정책 대상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 여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배정 대상 여부
서울	-	-	X	X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O	O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	O	O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O	O
대전	-	대덕구, 동구, 중구	X	O
광주	-	동구	X	O
울산	-	-	X	O
세종	-	-	X	X
경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O	O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O	O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O	O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O	O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O	O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통영시	O	O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O	O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O	O
제주	-	-	X	O

주: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관심지역 내용 파악이 가능한 시·도에 음영 표시함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고 관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에 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관심지역 내용을 검토함

## 2. 분석 결과

### □ 부산광역시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 모든 구·군을 분석하여 인구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도 검토함
- 그러나 부산 인구감소지역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함
  - 약점요인으로 “한국전쟁기 이후 형성된 산복도로 일대의 주거지의 노후화 및 공·폐가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제시하고 기회요인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원도심권 내 밀집 지정으로 생활권 간 연계 사업이 용이함”을 제시한 사항이 인구감소지역과 연관되어 있음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지역 주도 인구정책 기반의 시민행복 미래도시 부산’임
  - 목표로 ‘정주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부산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마련’,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한 인구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 전략으로 ‘보육, 출산, 복지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포용적 생활환경 조성’, ‘지역 내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활력 전략 구축’, ‘지역신산업 육성 등 산업여건 변화 기반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정책을 활용한 인구구조 안정화 여건 조성’ 등을 제시함

그림 2-4 |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는 부산 전체적으로 청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관심지역에는 광역계정 투입 계획이 없음
  - [표 2-10]은 부산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부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부산형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산학연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나타남
    - ‘지산학연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부산형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부산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청년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임

**| 표 2-10 | 부산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 ('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교육	지산학연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200	200	0
전역	관광	「부산 브랜드샵」운영 및 활성화 사업	450	450	0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7,779	7,779	0
	일자리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1,000	1,000	0

출처: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부산 관심지역인 금정구, 중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11]은 부산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부산광역시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음
  - 2022~2023년 부산 금정구에서는 ‘글로벌문화 in(人) 남산’, ‘금정산성마을 청년 ‘러스틱 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함
  - 같은 기간 중구에서는 ‘중구 국제화센터 조성 및 운영’, ‘중구형 복합복지케어 거점시설 조성’, ‘광복로 분수광장(만남의 광장) 조성’, ‘중구 작은 음악당 조성’ 등을 추진함

**| 표 2-11 | 부산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부산 금정구	문화·관광	글로벌문화 in(人) 남산	0	0
	산업·일자리	금정산성마을 청년 ‘러스틱 라이프’ 프로젝트	0	0
부산 중구	교육	중구 국제화센터 조성 및 운영	0	0
	문화·관광	광복로 분수광장(만남의 광장) 조성		0
		중구 작은 음악당 조성		0
	기타	중구형 복합복지케어 거점시설 조성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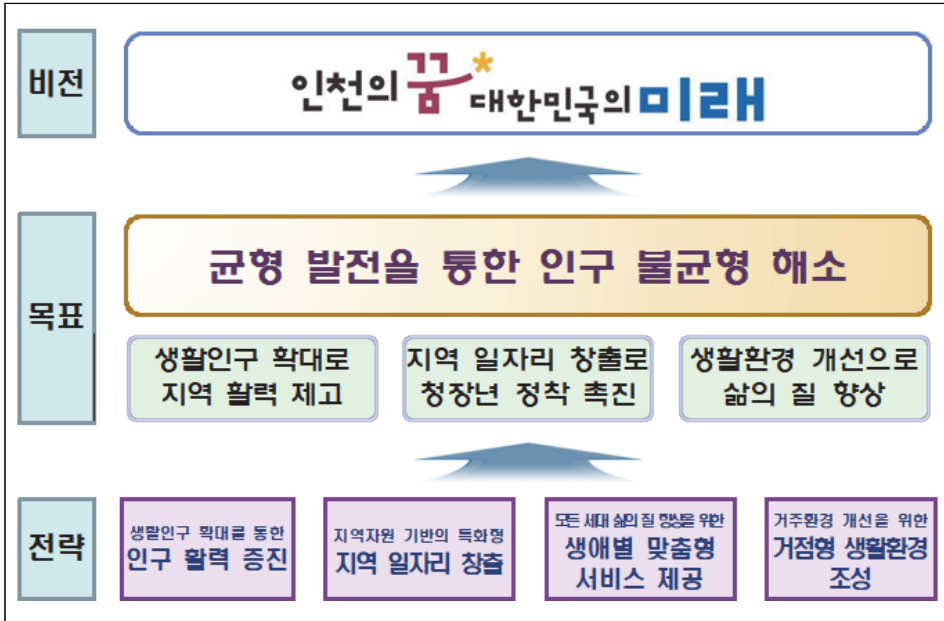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 종합하면, 부산광역시는 인구감소 대응 과정에서 관심지역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관심지역은 중구와 금정구지만, 금정구에 대한 사항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음
  - 중구는 인구감소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와 인접해 있으며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어, 시·도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 함께 다뤄지고 있음
    - ‘한달 살아보니, 살기좋은 부산 운영사업’은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도심 체류형 관광을 늘리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숙박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 인천광역시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을 중심으로 검토함
- 인천광역시 전체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이 지닌 특성에 집중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함
  - 강화군, 옹진군의 입지, 정주 환경, 경제 현황, 인구 현황을 중심으로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SWOT 분석을 실시해 대응과제를 도출함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에도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임
  - 목표로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력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 정착 촉진’,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함
  - 전략으로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그림 2-5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인천광역시, 2023.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지역에도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임
  - [표 2-12]는 인천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인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강화 와글와글 새시장’, ‘자월면 천문과학관 설립’, ‘인천 섬 포털 구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4개 사업으로 나타남
  - 광역계정 기금액이 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인천 섬 포털 구축’이 인천광역시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강화 와글와글 새시장’, ‘자월면 천문과학관 설립’은 사업비 대부분이 기초계정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점사업임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임

| 표 2-12 | 인천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 ('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관광	강화 와글와글 새시장	2,750	100	2,200
		자월면 천문과학관 건립	5,500	100	3,600
		인천 섬 포털 구축	1,143	1,143	0
인구감소 지역, 관심지역	일자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840	2,440	100

출처: 인천광역시. 2023.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인천 관심지역인 동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13]은 인천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음
  - 2022~2023년 인천 동구에서는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지역 특화 사업’,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함

| 표 2-13 | 인천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인천 동구	문화·관광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지역 특화 사업	○	○
	산업·일자리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는 관심지역인 동구를 크게 지원하진 않고 있으며 동구에서는 자체 기금사업을 매년 1~2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지역 및 인구여건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고 있어서 관심지역에 대한 사항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추진 시 관심지역에도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이 있음

## □ 경기도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을 중심으로 검토함
- 경기도 전체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이 지닌 특성에 집중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함
  - 가평군, 연천군의 교통, 주거, 교육, 관광, 보건·복지, 산업 등 지역 여건과 인구 여건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하고 SWOT 분석을 실시해 대응과제를 도출함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에도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임
  - 목표로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 환경 개선’을 제시함
  -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그림 2-6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경기도, 2023.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직접/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지역에도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임
  - [표 2-14]는 경기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경기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가평군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사업’,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사업’,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직접/지원)’ 등 6개 사업으로 나타남
  -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직접/지원)’이 관심지역과 관련이 있음
    -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사업 발굴,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 관련 연구 등 연구용역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워크숍 및 회의 운영 지원 등 운영비를 사업내용으로 함

【표 2-14】 경기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지역	복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25	425	0
	일자리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363	330	0
	산업	가평군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사업	515	425	0
	귀농·귀촌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사업	360	126	0
	커뮤니티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300	300	0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기타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직접/지원)	972	972	0

출처: 경기도. 2023.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 경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15]는 경기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경기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음
  - 2022~2023년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전 및 보강 사업’, ‘꿈일다 프로젝트 사업’,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함
  - 같은 기간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및 기숙사(긴급구호, 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

【표 2-15】 경기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경기 동두천시	노인·의료	꿈일다 프로젝트 사업	0	0
	문화·관광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전 및 보강사업	0	
	보육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0	0
경기 포천시	주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및 기숙사(긴급구호, 쉼터) 건립사업	0	0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 종합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를 크게 지원하는 바는 없으며, 동두천시, 포천시가 자체 기금사업을 매년 1~3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지역 및 인구여건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고 있어서 관심지역에 대한 사항이 잘 드러나지 않음
  - 경기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예외적으로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직접/지원)' 사업 추진 시 관심지역에도 일부 투입할 예정임
  - 그러나,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직접/지원)' 사업은 연구용역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 경상북도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경상북도 모든 구·군을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관심지역도 검토함
  - 공간적 범위 설정 시 "인구감소는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이 복합적인 상호 영향관계에 있음. 광역 차원의 전체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 경상북도 모든 시군을 함께 고려함"이라고 명시함
- 경상북도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함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에도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지방시대 인구유입 1번지, 경상북도 K-로컬 전성시대'임
  - 목표로 '청년이 정착하는 경북', '출향인이 돌아오는 경북',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경북'을 제시함
  - 전략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방문유입 활성화', '필수 생활환경 강화', '외국인 이주정착 지원' 등을 제시함

〔그림 2-7〕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경상북도, 2023.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지역과 도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관심지역과 관련된 사업도 4개 있음
  - [표 2-16]은 경상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경북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4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수가 많음
  -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은 21개, 관심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은 3개, 그 외 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은 2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1개,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15개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관심지역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목재친화형 생활 SOC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 ‘해양문화 기반 위케이션 빌리지 조성’, ‘농·귀촌 체류 허브시설 ‘웰컴팍 하우스’ 조성’, ‘어촌과 해양레저인이 상생하는 해양레저항 개발’ 등 4개 사업이 있음

| 표 2-16 | 경상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문화	교류 촉진거점 '휴먼뮤지엄' 조성	5,338	2,038	0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16,038	2,038	0
		울릉어울림문화센터	2,038	2,038	0
		희망예술마루	5,031	2,038	0
	관광	경북의 해안정원, 「cuREst (치유+휴양)영덕town」 조성사업	13,538	2,038	0
		백두대간 힐링 펫(PET) 빌리지 조성	4,800	2,051	0
		영양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	2,038	2,038	0
	일자리	농업인 행복이음 클러스터	2,038	2,038	0
		안동형 바이오·백신 일자리 상생프로젝트	4,700	2,038	0
	산업	산업단지 기반정비 신활력사업	5,600	2,800	0
		청송사과 브랜드 제고 기반 구축	2,008	2,008	0
	보건·의료	온세대 플랫폼 구축	10,538	2,038	0
	주거	〈금수장 2호〉 청춘셋별맨션	2,018	2,018	0
		지역활력타운	40,618	6,000	0
		청년예술가 아지트 조성	2,688	1,838	0
	귀농·귀촌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	2,038	2,038	0
	커뮤니티	군위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2,038	2,038	0
		이웃사촌마을 확산	100,000	50,000	0
	기타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2,000	900	0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	4,000	2,000	0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2,038	2,038	0	
관심지역	관광	목재친화형 생활 SOC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	1,838	1,138	0
		해양문화 기반 위케이션 빌리지 조성	4,000	2,000	0
	주거	농·귀촌 체류 허브시설 '웰컴팍 하우스' 조성	3,638	2,038	0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그 외 지역	복지	공공산후조리원	10,400	7,300	0
	산업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10,000	5,000	0
인구감소 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관광	어촌과 해양레저인이 상생하는 해양레저항 개발	4,000	2,000	0
전역	교육	지역대학 상생협력 사업	1,435	1,000	0
	복지	경북형 아동 발달지연 백신 프로젝트	2,300	2,300	0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	7,500	7,500	0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3,000	1,500	0
	관광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24,420	10,000	0
	일자리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4,000	4,000	0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4,200	4,200	0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	118,595	54,000	0
	환경기초	생활SOC 지원사업	6,000	3,000	0
	커뮤니티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3,420	1,000	0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13,400	7,400	0
	기타	생활인구 유입 프로젝트	4,080	2,040	0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	8,000	3,500	0
		인구구조 변화대응 전략구상	2,380	2,360	0
지방소멸 대응인구-산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2,000	2,000	0	

출처: 경상북도, 2023.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경상북도 관심지역인 경주시, 김천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17]은 경상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경상북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음

- 2022~2023년 경북 경주시는 ‘경주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팍하우스’ 조성’을 추진함
- 같은 기간 경북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연계 산모케어 프로그램 선진화사업’, ‘목재친화형 생활soc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신중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사업’, ‘튜닝모빌리티 성능 시험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종사자 정주환경 조성사업’,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직업인 양성 프로젝트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함

| 표 2-17 | 경상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경북 경주시	주거	경주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팍하우스’ 조성	0	0
경북 김천시	보육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연계 산모케어 프로그램 선진화사업	0	0
	산업·일자리	목재친화형 생활soc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0	0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사업	0	0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직업인 양성 프로젝트 사업		0
	주거	튜닝모빌리티 성능시험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종사자 정주환경 조성사업	0	0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관심지역까지 포괄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관심지역에서는 자체 기금사업을 매년 1~3개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모든 구·군을 분석하고 경상북도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과제를 도출함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임
- 총 42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관심지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타남

## □ 경상남도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경상남도 모든 구·군을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관심지역도 검토함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을 구분하여 여건을 분석하였음
- 여건 분석 과정에서 관심지역인 경남 통영시는 ‘일자리 취약지역’, 경남 사천시 ‘저출산 탈피 가능 지역’으로 유형을 분류하였음
- 경상남도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함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에도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경남 미래를 위한 균형과 상생의 재도약’임
  - 목표로 ‘생활인구 15% 확보’, ‘청년인구 감소율 2% 미만’, ‘정주인구 330만 명 유지’를 제시함
  -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안착’,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함

| 그림 2-8 |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경상남도. 2023.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경상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관심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표 2-18]은 경상남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경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경남 더채움지원사업’, ‘경남 작은학교 큰 꿈 지원사업’, ‘아이꿈키움 공간 조성사업’, ‘경남 “매력 up” 지원사업’, ‘머물터 조성사업’, ‘워케이션 1번지 조성사업’, ‘소득기반조성 지원사업’, ‘경남 청년일자리 조성사업’, ‘경남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경남 행복더하기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나타남
  - 이 중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경남 행복더하기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인구감소지역만이 아니라 관심지역과도 관련이 있음

| 표 2-18 | 경상남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교육	경남 더채움지원사업	11,100	6,050	0
		경남 작은학교 큰 꿈 지원사업	9,300	4,710	0
	복지	아이꿈키움 공간 조성사업	5,475	4,160	0
		관광	경남 “매력 up” 지원사업	7,700	1,700
	머물터 조성사업		24,712	8,756	0
	워케이션 1번지 조성사업		8,450	3,650	0
	일자리	소득기반조성 지원사업	840	525	0
	산업	경남 청년일자리 조성사업	14,000	14,000	0
	주거	경남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16,050	10,000	0
인구감소 지역, 관심지역	관광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40,200	20,100	0
		주거	경남 행복더하기 지원사업	10,738	7,546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조성사업		60,000	60,000	0

출처: 경상남도, 2023.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경남 관심지역인 사천시, 통영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19]는 경상남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부록에 관심지역 자체 계획도 담고 있는 점이 다른 시·도와 다른 점임
  - 2022~2023년 경남 사천시에서는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 ‘실안노을빛 걷고싶은거리 조성’, ‘차세대 인재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을 추진함
    - 경남 사천시가 ‘저출산 탈피 가능 지역’으로 분석된 것과 달리, 문화·관광 분야 사업 3개와 산업·일자리 분야 사업 1개를 발굴함
  - 같은 기간 경남 통영시는 ‘욕지 어울림문화센터조성 사업’, ‘통영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을 추진함
    - 문화·관광, 보육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남 통영시가 ‘일자리 취약지역’으로 분석된 것과 일치하지 않음

【표 2-19】 경상남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경남 사천시	문화·관광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0	0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	0	0
		실안노을빛 걷고싶은거리 조성	0	0
	산업·일자리	차세대인재플랫폼 구축	0	0
경남 통영시	문화·관광	욕지 어울림문화센터조성 사업	0	
	보육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0	0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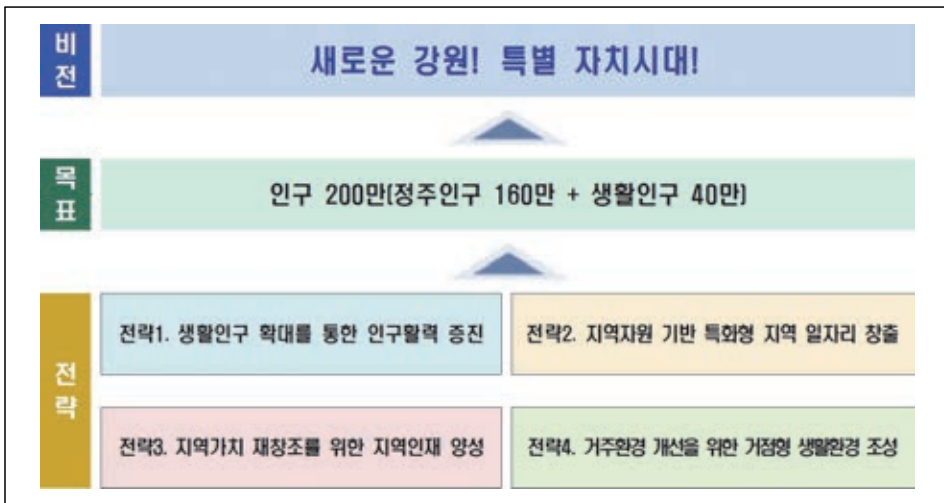
- 종합하면, 경상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지만, 세부 사업내용이 관심지역 대응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경상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집중 투입하고,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관심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경상남도는 관심지역을 포함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지만, 세부 사업내용이 관심지역 대응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강원도 모든 구·군을 종합 분석함
- 강원도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함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에도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임
  - 목표로 ‘인구 200만(정주인구 160만, 생활인구 40만)’을 제시함
  -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지역자원 기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함

[그림 2-9]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202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총 25개 사업 중 5개가 관심지역과 관련됨

- [표 2-20]은 강원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강원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수가 많음
-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은 19개, 관심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은 4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은 1개,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 1개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관심지역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 ‘아름다운 마을 목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다시 봄비는 44국도 만들기’ 등 5개 사업이 있음
  - ‘다시 봄비는 44국도 만들기’는 홍천군, 인제군,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은 속초시,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는 인제군,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은 강릉시, ‘아름다운 마을 목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은 동해시를 대상으로 함
  - 강원도는 각 관심지역에 광역계정을 균등하게 배정한 것이 특징적임

표 2-20 |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문화	대백형 클라인가르텐 구축	12,700	8,000	0
	관광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유입 확대 지역협력사업	4,602	4,300	0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15,000	12,000	0
	일자리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10,200	8,000	0
		수소기업육성 신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	69,800	8,000	43,440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	39,239	16,000	10,700
		해안 야생화특화 지역경제육성사업	3,700	2,960	0
		횡성 미래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94,552	8,000	26,200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산업	K-Bio 첨단도시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8,840	6,400	0
		디지털 농업 기반 고령지 스마트팜 조성	5,375	4,700	0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살고 싶은 미래농업도시 육성	8,823	6,000	0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16,050	5,600	7,490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23,000	6,000	14,300
	보건·의료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5,532	4,700	0
		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16,725	8,000	6,725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케어	28,500	8,000	16,600
		지역균형·주민중심의 건강서비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사업」 운영	11,144	5,820	0
	주거	스테이(stay) 화천! “간동 복합 힐링타운 조성사업”	39,200	12,000	2,000
커뮤니티	K-Bio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6,500	3,600	2,000	
관심지역	관광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	4,000	4,000	0
		아름다운 마을 목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4,000	4,000	0
	일자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4,000	4,000	0
	기타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3,920	3,920	0
인구감소 지역, 관심지역	교통	다시 봄비는 44국도 만들기	6,680	4,700	0
전역	기타	지방소멸대응사업 운영지원 (거점센터 및 역량강화)	4,542	4,542	0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202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 강원도 관심지역인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21]은 강원특별자치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음
  - 2022~2023년 강원 강릉시에서는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함
  - 같은 기간 강원 동해시는 같은 기간 ‘목호 오션가든 조성’ 사업을 추진함
  - 같은 기간 강원 속초시는 ‘문화형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지원’, ‘실버 일자리 사업의 고도화 및 삶의 질 향상’, ‘설악동 체류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여건 개선’, ‘산업청년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함
  - 같은 기간 강원 인제군은 같은 기간 ‘다시 봄비는 44국도 활성화 사업’, ‘인제 비건 청년마을 조성사업’, ‘인제 살아보기’,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함

표 2-21 | 강원특별자치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강원 강릉시	산업·일자리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0	0
	주거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0	0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사업	0	0
강원 동해시	산업·일자리	목호 오션가든 조성	0	0
강원 속초시	문화·관광	문화형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지원	0	0
		설악동 체류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여건 개선	0	0
	산업·일자리	실버 일자리사업의 고도화 및 삶의 질 향상	0	0
	주거	산업청년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지원		0
강원 인제군	교통	다시 봄비는 44국도 활성화 사업	0	
	문화·관광	인제 살아보기	0	0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	0	0
	보육	인제 키지트(키즈+아지트) 조성 사업	0	0
	주거	인제 비건 청년마을 조성사업	0	0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 종합하면, 강원도는 관심지역까지 포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심지역에서는 자체 기금사업을 매년 1~5개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는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모든 구·군을 분석하고 강원도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과제를 도출함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임
  - 강원도가 각 관심지역에 광역계정을 균등하게 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임

#### □ 전라북도

- 지역 및 인구여건 분석 과정에서 전라북도 모든 시·군을 종합 분석함
- 전라북도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과제를 도출함
- 비전, 목표, 전략 수립 시 관심지역 현황이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았음
  - 비전은 ‘함께 돌봄, 함께 누리, 행복한 전북’임
  - 목표로 ‘함께 살고 싶은 전북’, ‘함께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 ‘함께 행복한 전북’을 제시함
  - 전략으로 ‘결혼·출산 지원’, ‘충충한 돌봄 확대’, ‘특성화 교육 제공’,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충’, ‘삶의 질 및 지역활력 제고’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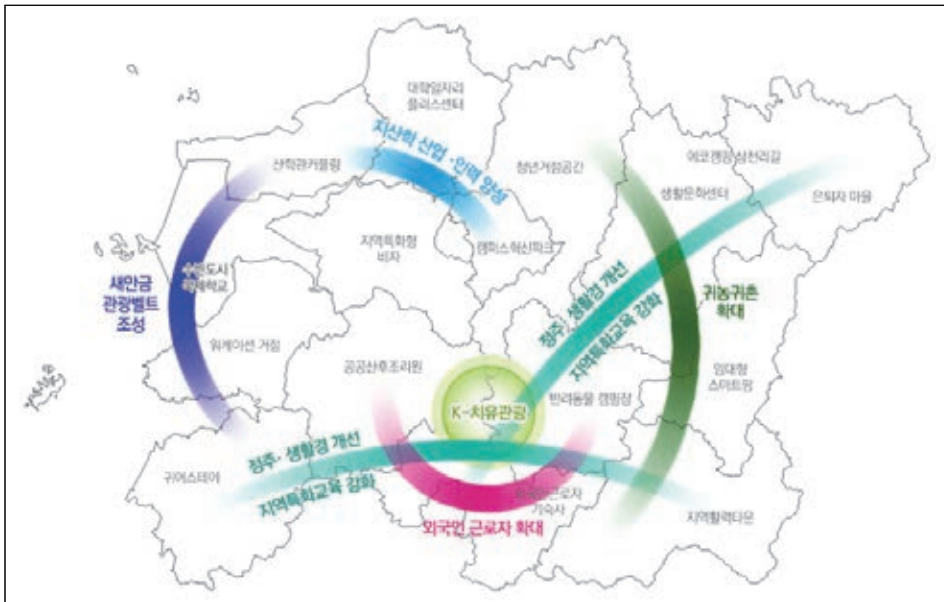
〈그림 2-10〉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출처: 전라북도. 2023.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전북의 특징적인 점은 시·군 계획 방향과 사업을 고려하여 공간구상을 설정하고 있는 점임
  - [그림 2-11]과 같이 전북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을 아우르는 공간구상을 제시함
  - 전북 관심지역인 익산시의 경우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조성하고 전주시, 군산시와 함께 지산학 산업·인력 양성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1]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공간 구상



출처: 전라북도, 2023.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전라북도는 인구감소지역보다 도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비중이 높으며, 관심지역에도 광역계정 일부를 투입할 계획이 있음
  - [표 2-22]는 전라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을 나타냄
  - 전라북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수가 많음



-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은 9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은 2개, 인구감소지역, 그 외 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은 2개,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17개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관심지역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지역 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2개 사업이 있음

| 표 2-22 | 전라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인구감소 지역	교육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2,000	2,000	0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9,000	5,400	0
	관광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30,000	18,200	0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전북 야간관광 활성화	3,000	1,800	0
	일자리	동부권 임대형 버티컬 팜 실증사업	5,000	2,500	0
	환경기초	물복지 사각지대 농어촌 상수도 확대	12,000	8,400	0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	15,003	9,002	0
	보건·의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4,000	7,600	0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2,200	1,320	0	
인구감소 지역, 관심지역	교육	지역 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	5,000	5,000	0
	일자리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42,150	21,250	0
인구감소 지역, 그 외 지역	주거	섬마을 LPG 시설구축 지원	1,277	580	0
	귀농·귀촌	어촌 유희시설 활용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	5,400	3,510	0
전역	복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3,500	2,100	0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1,200	720	0
	관광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7,000	4,129	0
		체육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1,000	500

예산투입 지역	사업유형	사업명	총 사업비 (‘22~’26)	지방소멸대응기금(‘22~’26)	
				광역계정	기초계정
전역	일자리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	1,120	696	0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2,100	1,260	0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50	650	0
	주거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86,556	9,244	0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9,000	4,680	0
	귀농·귀촌	귀농 귀촌 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9,000	5,400	0
	귀농·귀촌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2,000	2,000	0
		여촌활력 제고를 위한 어업활동 지원	600	360	0
	커뮤니티	농촌 과소화지역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3,250	1,950	0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스쿨 In 전북	600	432	0
		도농융합 상생시대 대응,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1,930	1,158	0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700	700	0
		함께인구 확보를 위한 사랑도민제도 활성화	420	90	0

출처: 전라북도, 2023.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전북 관심지역인 익산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표 2-23]은 전라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을 나타냄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관심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 2022~2023년 전북 익산시에서는 ‘시니어 전문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 인력 양성사업’, ‘위드로컬 패키지(익산시 다이로움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함

| 표 2-23 | 전라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자치단체명	분야	투자사업명	2022	2023
전북 익산시	교육	시니어 전문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 인력 양성사업		0
	산업·일자리	위드로컬 패키지 (익산시 다이로움 청년창업 지원사업)	0	0
	주거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0	0

출처: 나라살림 브리핑, 2022~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http://narasallim.net/report/525>.

- 종합하면, 전라북도는 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관심지역인 전북 익산시는 자체 기금사업을 매년 2~3개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여러 시·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에 광역계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 예: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이 투입되는 사업 총 30개 중 관심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2개가 있어, 관심지역도 일부 지원할 계획임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공간구상에서 제시된 익산시의 방향성이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공간구상에 따르면, 익산시는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이나 지산학 산업·인력 양성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되어야 함
    - 그러나, 익산시 대상 기금사업을 보면, 아동·청소년, 중장년, 전생애 대상 교육 사업이나 주거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3절 시사점

#### 1. 현행 지원체계에 관심지역 통합 필요

○ [표 2-24]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대상 지역을 정리한 표를 나타냄

표 2-24 |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대상 지역

구분	정책	대상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행정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	○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		
	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	○	○
	지역 역량강화 지원	○	
재정 지원	지방교부세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	
정보·인재 지원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제공*	○	○

주: 부처 간 연계사업은 사업에 따라 대상이 다르며, 투자계획 컨설팅 제공은 2024년(2025년 기금사업)부터 진행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관심지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없음
  - [표 2-24]를 보면,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제공’ 등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단기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관심지역을 현행 지원체계에 통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 구체화

### □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필요성

-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사 결과, 부산, 경북, 전북은 시·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광역계정을 투입할 계획이나, 인천, 경기, 경남, 강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광역계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임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구체화하여 시·군·구를 넘어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광역 단위 비전 제시 및 조정 역할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단위 비전을 제시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독려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함
-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조정 역할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광역 단위 비전 안에서 중앙부처 재정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관심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음

#### □ 각 지역에 차별화된 방향성 제시 역할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성과 비전을 차별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은 시·도 기본계획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을 아우르는 공간구상을 제시하고 있음(그림 2-11) 참고)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상을 설정하여, 각 지역이 차별화된 방향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특히, 시·도 내에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경제 성장 전략, 생활서비스 기능 분담 전략,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담 역할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 기능을 구체화한 공간구상을 제시할 수 있음

#### □ 관심지역의 중장기적 사업 발굴 지원 역할

- 현재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과 사업 수를 고려할 때 관심지역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음
- 시·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가 관심지역과 협의하여 관심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 제 3 장

##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일본

제3절 대만

제4절 소결





# 03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 전 세계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장소 기반 정책 (Place-based policy)을 시행하고 있음
  - 장소 기반 정책은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되며, 특정 지역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조함
  - 유럽에서는 특히 농촌 인구감소가 주요 문제로 인식되어 지역별로 정책을 시행하여 농촌지역 경제적 쇠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농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 기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음
  - 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 농촌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방 쇠퇴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 가운데, 한국과 비슷한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각 국가에서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 인구수, 인구밀도, 연간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가장 큰 도시 인구 비율, 1인당 GDP 등을 기준으로 비교함
  - 한국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가장 큰 도시로 인구 집중 경향이 강한 일본과 대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표 3-1】 사례조사 후보 국가 개요

(단위: 만 명, 명/km<sup>2</sup>, %, %, %, \$)

국가	인구수 (2022)	인구밀도 (2021)	연간 인구 증가율 (2022)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2022)	가장 큰 도시 인구 비율 (2022)	1인당 GDP (2022)
한국	5,163	530	-0.2	17	19	32,390
일본	12,512	345	-0.4	30	30	34,000
대만	2,389	675	0.1	17	33	32,610
스페인	4,778	95	0.8	20	14	29,800
이탈리아	5,894	200	-0.3	24	7	35,040
독일	8,380	238	0.7	22	4	48,760
프랑스	6,797	124	0.3	22	16	42,310

출처: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World Bank Open Data 자료를 참고함  
 대만 인구수부터 가장 큰 도시 인구 비율까지는 Worldometer 자료를 참고함  
 1인당 GDP는 IMF Datamapper 자료를 참고함

- 일본과 대만의 배경, 행정 지원, 정보·재정·인재 지원 측면을 조사함
  - 배경으로는 인구감소 현황, 정부 대응 과정을 조사함
  - 행정 지원으로는 법률적 근거, 추진 조직체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에 대해 조사함
  - 정보·재정·인재 지원으로는 정보 지원, 재정 지원, 인재 지원 등을 조사함

【표 3-2】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 현황</li> <li>• 정부 대응 과정</li> </ul>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적 근거</li> <li>• 추진 조직체계</li> <li>•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li> <li>•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li> </ul>
정보·재정·인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지원</li> <li>• 재정 지원</li> <li>• 인재 지원</li> </ul>

## 제2절 일본

### 1. 배경

#### □ 일본 인구감소 현황(閣議決定 2020; 2023)

-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일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음
  - 일본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9년 기준 1억 2,616만 7천 명이었으며,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3,588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음
  - 2023년 4월에 공개된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에는 일본 인구는 8,7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출생 동향을 보면, 2022년 출생 수는 77만 759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음
- 도쿄와 지방 간 균형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며, 지역 인구감소, 지역 산업 위축, 수도 직하지진 등 대규모 재해 대응이 큰 과제로 남아 있음
  - 2019년 도쿄권에는 약 3,700만 명, 일본 인구의 29%가 거주하고 있어 유럽, 미국에 비해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음
  - 도쿄권 인구 집중은 지방에서 도쿄권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발생함
- 지역경제 축소는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인구감소는 다시 지역경제 축소를 유발하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 일본 도시 축소 담론 변화(Hattori, Kaido, and Matsuyuki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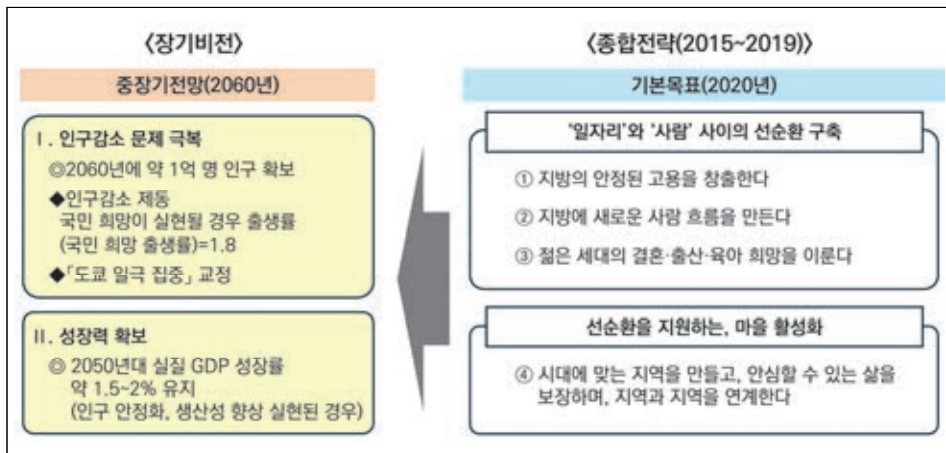
- 1960년대 일본에서는 쇠퇴하는 마을이나 산업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음
  - 1960년에 최대 5천 명의 인구를 가진 석탄 채굴 섬인 하시마는 1974년에 폐허가 되었음

- 동부 홋카이도 유베츠 마을도 석탄 채굴 마을로, 1950년대에는 최대 1만 2천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2015년에는 500명으로 줄어들었음
- 1960년대에는 특히 멀리 떨어진 지방 지역에서 젊은 세대의 대도시로의 대규모 이주가 이뤄짐
- 이러한 현상은 쇠퇴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됨
  - 1960년대 후반, 시마네현 히키미초 시장이 ‘과소(過疎)’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음
  - 1970년대에는 학계에서 과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나타나면서, 산림 관리부터 교육·의료 서비스까지를 포함한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음
- 그 결과, 1970년에는 「과소지역 대책 긴급 조치법(過疎地域対策緊急措置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10년간 유지되는 한시법이었지만 4번 연장되어 현재 까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도시 축소에 관한 논의가 계획 분야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200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 도시 축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학문적 주제와 정치적 문제로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뤄지던 논의가 작용한 결과임
- 인구감소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이후로, 유바리시 파산 사례, 인구 조사 결과 발표, 마스다 리포트 등이 등장한 이후임
  - 2007년 홋카이도 탄광도시 유바리시 파산은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음
  - 2010년 인구 조사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안겼음
  - 2014년 5월 8일,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대신이자 전 이와테현 지사가 발표한 마스다 리포트는 ‘소멸 가능성 도시(消滅可能性都市)’를 최초로 사용하여 도시 축소를 경고하였으며, 인구감소와 행정 기능 불능으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높였음

□ 최근 일본 정부 대응 과정

-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이 제정되고, 내각에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가 설치되었음
- 2014년 1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을 발표하고, 이와 동시에 향후 5년간(2015~2019년)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리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을 발표했음
- 장기비전을 근거로 종합전략에서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선언함
  - 2060년에는 약 1억 명 인구를 확보하고 2050년대 실질 GDP 성장률 약 1.5~2%대를 유지하는 장기비전을 제시함
  - ‘지방의 안정된 고용을 창출한다’, ‘지방에 새로운 사람 흐름을 만든다’,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을 이룬다’,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 등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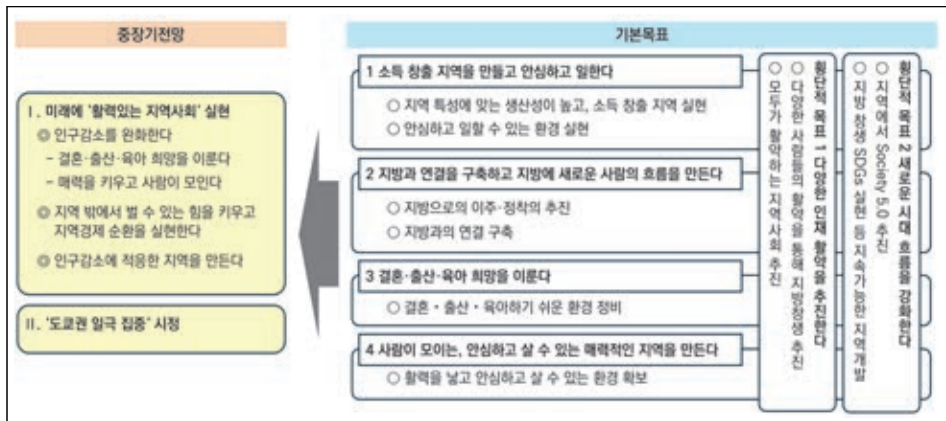
| 그림 3-1 |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목표



출처: 閣議決定. 2014.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と「総合戦略」の全体像等.”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20141227siryou1.pdf>

- 2019년에는 지난 5년간(2015~2019년) 추진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2020~2024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 발표되었음
  - 미래에 활력있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 도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역외소득을 높여 지역경제 순환을 실현하고 인구감소에 적응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함
- 2022년 1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종합전략(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2027)’을 새롭게 책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텔레워크 보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여건이 지금까지와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종합전략’을 책정함
  - 이는 기존 지방창생 전략에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가하여 지역 활성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림 3-2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목표



출처: 閣議決定. 2019.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令和元年改訂版)及び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概要).”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r1-12-20-gaiyou.pdf>.

## 2. 행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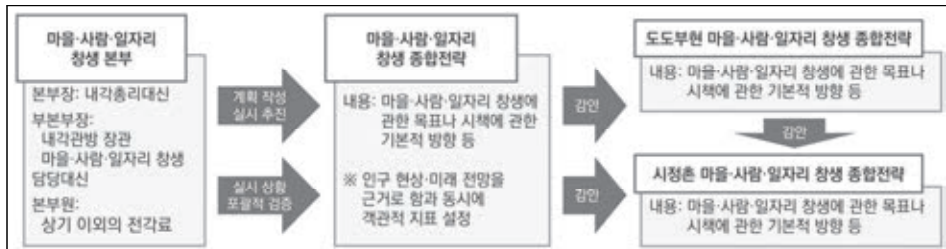
### □ 법률적 근거

- 2014년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 제정됨
  -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감소를 막고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조절하고, 지역사회에서 풍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활력 있는 일본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형성과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확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됨
  -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 작성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설치 근거를 제공함

### □ 추진 조직체계

- 일본 정부 대응은 각 지역이 장점과 매력을 살려내는 방법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는 중앙 관계 부처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관 종합전략’ 작성을 통해 어떤 정책을 조합하여 추진할 것인지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함
  -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지방 인구 비전’과 도도부현과 시정촌 단위 ‘지방관 종합전략’을 책정함

〈그림 3-3〉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추진 구조



출처: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内閣府地方創生推進室, 2020. “「地方版総合戦略」の策定について.”

-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에 근거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음
  - 부처 간 독립적 업무 결정 구조를 없애고 종합적이고 일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함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됨
  - 이에 따라, 부문별 정책 추진에서 통합적 정책 추진으로 전환되었으며 하향식과 상향식 계획이 결합된 방식으로 바뀌었음
  - 본부에서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실시하는 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실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에 관한 시책 기획·입안·종합 조정하는 일 등을 담당함
- 중앙 관계 부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통해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책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시책을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에 관해 국가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실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시책을 책정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를 포괄하는 단체로서 광역에 걸친 시책을 중심으로 ‘지방관 종합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며, 도도부현과 시정촌 사이에 시책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의 경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과 지역 특색이나 자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정촌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관 종합전략’을 작성함
- 시정촌은 다른 시정촌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 광역 관광이나 관계인구 창출·확대 등 개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정촌과 연계하거나, 정주자립권이나 연계중추도시권 등 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경제, 문화, 지리적 측면에서 일체성이나 관계성이 있는 광역권을 형성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시정촌이 공동으로 ‘지방관 종합전략’을 책정할 수도 있음

#### □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 전략’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되지만,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은 거의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 수립되고 있음
  - 2021년 4월 1일 기준 전국 1,788개 지방자치단체(47개 도도부현, 1,741개 시정촌) 중 1,759개 단체에서 지방관 종합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지방관 종합전략이 없다고 응답한 29개 단체도 향후 개정 및 연장 등을 통해 지방관 종합전략을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21)
- 이처럼 일본에선 인구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재정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와 관계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관 종합전략’을 수립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창생 관계 교부금(地方創生関係交付金)’을 배부함으로써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창생 선행형 교부금(地方創生先行型交付金), 지방창생 가속화 교부금(地方創生加速化交付金), 지방창생 추진 교부금(地方創生推進交付金), 지방창생 거점 정비 교부금(地方創生拠点整備交付金) 등 ‘지방창생 관계 교부금’을 통해 도도부현, 시구정촌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창생 선행형 교부금, 지방창생 가속화 교부금, 지방창생 추진 교부금을 합쳐 ‘추진 교부금’, 지방창생 거점 정비 교부금을 ‘거점 정비 교부금’이라고 줄여서 부름
- 추진 교부금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로 ‘지역판 종합전략’ 목표 실현에 대한 기여도, 지역재생법에 따른 인정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 선도성 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즉, 일본은 지방창생을 위해 국가에서 지역 여건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총무성(總務省)이 과소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과소지역(過疎地域)’이 있음
  - 과소법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 지역 진흥법 중 하나로, 인구와 재정력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과소 시정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1970년 「과소지역 대책 긴급 조치법(過疎地域対策緊急措置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네 개의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음
  - [표 3-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새로운 과소법이 제정될 때마다 목적, 과소지역 지정 요건, 지원 내용 등이 일부 수정되었음
- 「과소지역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과소법’)에 근거하여 과소지역은 ‘전부과소(全部過疎)’, ‘간주과소(みなし過疎)’, ‘일부과소(一部過疎)’ 세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 간주과소는 전부과소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합병된 시정촌 전역을 특별히 과소로 간주함
  - 일부과소는 간주과소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 전 시정촌 지역만을 과소로 간주함
  - 전부과소, 간주과소, 일부과소 등 유형별 근거 규정과 요건은 [표 3-4]에 정리되어 있음

- 간주과소, 일부과소는 시정촌 합병 특례 조치 이후 추가된 유형이며 과소법  
신법 제정 시에도 계승되고 있음
  - 합병 전 비 과소지역이었던 시정촌이 재정력이 약한 과소 시정촌과 합병한  
후 간주과소로 지정될 경우 과소대책을 추진할 수 있음
  - 간주과소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일부과소와 비교해 인구감소율이나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 수, 재정력지수 측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

표 3-3 | 과소범 변경 과정

구분	「과소지역 대책 긴급 조치법」 (「過疎地域対策緊急措置法」)	「과소지역 진흥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振興特別措置法」)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과소지역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기간	1970~79년	1980~89년	1990~99년	2000~20년	2021~30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인구 감소 방지</li> <li>지역사회 기반 강화 (주민 복지 향상, 지역 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소지역 진흥 (주민 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 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소지역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 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소지역 자립 촉진 (주민 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 격차 해소, 이룸담고 품격있는 국토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인재 확보 및 육성, 고용기회 확대, 주민 복지 향상, 지역 격차 해소, 이룸담고 품격 있는 국토 형성)</li> </ul>
	과 소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간 인구 감소율 10% 이상 (1960~6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간 인구 감소율 20% 이상 (1960~7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li> <li>(a) 25년간 인구 감소율 25% 이상 (1960~85년)</li> <li>(b) 25년간 인구 감소율 20% 이상(1985년 노인 비율 16% 이상 혹은 청소년 비율 16%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li> <li>(a) 35년간 인구 감소율 30% 이상인 경우 (1960~95년)</li> <li>(b) 35년간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1995년 노인 비율 24% 이상 혹은 청소년 비율 15% 이하)</li> <li>(c) 25년간 인구 감소율 19% 이상(1970~95년)</li> </ul>

구분	「과소지역 대책 긴급 조치법」 (「過疎地域対策緊急措置法」)	「과소지역 진흥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振興特別措置法」)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	「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과소지역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재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력지수가 0.4 미만 (1966~68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력지수 0.37 이하 (1976~78년)</li> <li>공익경기수의 10억 엔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력지수 0.44 이하 (1986~88년)</li> <li>공익경기수의 10억 엔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력지수 0.42 이하 (1996~98년)</li> <li>공익경기수의 13억 엔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력지수 0.51 이하 (2017~19년)</li> <li>공익경기수의 40억 엔 이하</li> </ul>
주요 지원 조치 (잇따른 재정부터 신설·폐지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상 조치(보조율 상향 조정, 과소대책 사업제)</li> <li>행정상 조치(기간도로, 의료, 확보, 교통 확보)</li> <li>금융상 조치(주택금융 광고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li> <li>세법상 조치(감가상각 특례, 지방세 과세 면제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에 의한 감수 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상 조치(노인복지 증진, 교육 충실)</li> <li>금융상 조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상 조치(노인복지 증진, 고령자 복지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상 조치(하수도 사업 도도부현 대항, 정보 유통 원활화 등 지역문화 진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상 조치(이주·정주 촉진 등, 관광 진흥 등, 취업 촉진, 생활환경 정비, 보육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한 주민 부담 경감,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규제 검토)</li> <li>금융상 조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li> </ul>

주: 취소신은 폐지된 지원 조치를 나타냄  
출처: 立岡 健二郎(2023)의 [표 5]

【표 3-4】 과소지역 유형 및 요건

유형	근거 규정	요건
<p>전부과소 (全部過疎)</p>	<p>『과소지역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과소지역으로 2021년 4월 1일에 공시된 시정촌</p>	<p>【요건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소지역</p> <p>(1) 인구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 다만, (a), (b), 및 (c)의 경우, 평택 2년과 평택 27년의 인구증가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제외함.)</p> <p>(a)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28% 이상인 것.</p> <p>(b)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23% 이상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5% 이상인 것.</p> <p>(c)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23% 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11% 이하인 것.</p> <p>(d)平成2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21% 이상인 것.</p> <p>(2) 재정력 요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51 이하이고, 공영 경기 수입이 40억 엔 이하인 것.</p> <p>【요건 2】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소지역</p> <p>(1) 인구 요건 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23% 이상인 것. 다만, 平成2년과 平成27년의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제외함.</p> <p>(2) 재정력 요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4 이하이고, 공영 경기 수입이 40억 엔 이하인 것.</p> <p>【요건 3】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소지역</p> <p>(1) 구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과소지역을 그 지역으로 하는 시군.</p> <p>(2) 인구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 다만, 平成2년과 平成27년의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제외함.)</p> <p>(a)昭和35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40% 이상인 것.</p> <p>(b)昭和35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5% 이상인 것.</p> <p>(c)昭和35년과 平成27년의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11% 이하인 것.</p> <p>(3) 재정력 요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51 이하이고, 공영 경기 수입이 40억 엔 이하인 것.</p>

유형	근거 규정	요건
전부과소 (全部過疎)	<p>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읽어서 적용되는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소지역으로 2022년 4월 1일에 공식된 시정촌</p>	<p>【요건 1】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읽어서 적용되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소지역</p> <p>(1) 인구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 다만, (a), (b), 및 (c)의 경우, 平成7년과 令和2년의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제외함.)</p> <p>(a)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인 것.</p> <p>(b)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8% 이상인 것.</p> <p>(c)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11% 이하인 것.</p> <p>(d) 平成7년과 令和2년의 인구 감소율이 23% 이상인 것.</p> <p>(2) 재정력 요건 平成30년부터 令和2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51 이하이고, 공영 경기 수입이 40억 엔 이하인 것.</p> <p>【요건 2】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읽어서 적용되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소지역</p> <p>(1) 인구 요건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인 것. 다만, 平成7년과 令和2년의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제외함.</p> <p>(2) 재정력 요건 平成30년부터 令和2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4 이하이고, 공영 경기 수입이 40억 엔 이하인 것.</p>
간주과소 (みなし過疎)	<p>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 구역으로서 2021년 4월 1일에 공식된 시정촌</p>	<p>【요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p> <p>(1) 구 과소자립촉진지역 시정촌 중, 平成11년 4월 1일부터 令和3년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시정촌 합병을 한 시군임.</p> <p>(2) 규모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p> <p>(a) 해당 시정촌의 平成27년의 국세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를 해당 시정촌에 해당하는 일부 과소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이하 '요건해당구역')의 같은 해의 국세조사 결과에 따른 인수로 나눈 수치가 3 이하임.</p> <p>(b) 해당 시군의 면적을 요건해당구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가 2 이하임.</p> <p>(3) 인구 요건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가, 昭和35년, 昭和50년 및 平成2년의 국세조사 인구보다 감소하고 있음.</p>

유형	근거 규정	요건
<p>일부과소 (一部過疎)</p>	<p>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 혹은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 된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으로 2021년 4월 1일에 공시된 구역</p>	<p>(4) 재정력 요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51                      이하임.</p>
		<p>【요건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소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p> <p>(1) 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平成11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3년 3월 31일 사이에 합병한 시정촌의 구 시정촌을 말함) 구역인 것</p> <p>(2) 인구 요건(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 인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 다만, (a), (b), (c)의 경우, 平成2년과 平成27년의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제외함.)</p> <p>(a) 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 율이 28% 이상임.</p> <p>(b) 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 율이 23%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 이상임.</p> <p>(c) 昭和50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 율이 23% 이상이면서, 15세 이상부터 30세 미만 인구 비율이 11% 이하임.</p> <p>(d) 平成2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21% 이상임.</p> <p>(2) 재정력 조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64 이하이면서, 공영경기수익이 40억 엔 이하임.</p> <p>【요건 2】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과소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p> <p>(1) 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 구역인 것.</p> <p>(2) 인구 조건                      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 구역 인구가 昭和50년과 平成 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23% 이상임.                      다만, 平成2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제외함.</p> <p>(3) 재정력 조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4                      이하이면서, 공영경기수익이 40억 엔 이하임.</p> <p>【요건 3】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과소지역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p> <p>(1) 구 과소자립촉진지역 시정촌 또는 구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                      조치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적용을 받았던 지역인 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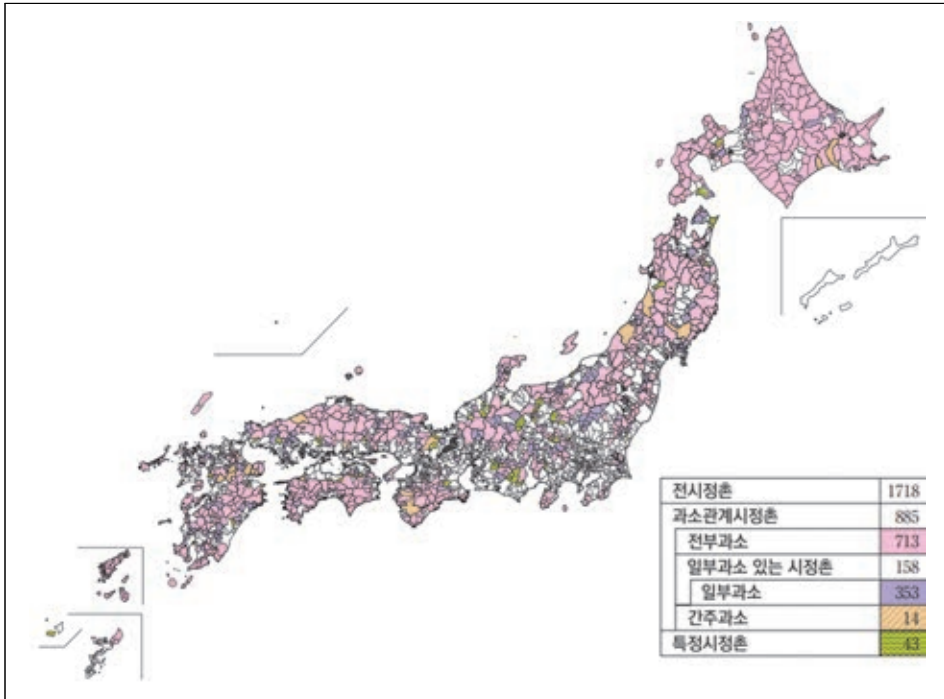
유형	근거 규정	요건
		<p>(2) 인구 조건 (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 인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平成2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제외함.)</p> <p>(a) 昭和35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40% 이상임.</p> <p>(b) 昭和35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 이상임.</p> <p>(c) 昭和35년과 平成27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이면서, 15세 이상부터 30세 미만 인구 비율이 11% 이하임.</p> <p>(3) 재정력 조건 平成29년부터 令和元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64 이하이면서, 공영경기수익이 40억 엔 이하임.</p>
일부과소 (一部過疎)	<p>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석되어 적용되는 동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으로 2022년 4월 1일에 공시된 구역</p>	<p>【요건 1】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 적용되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소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p> <p>(1) 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平成11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3년 3월 31일 사이에 합병한 시정촌의 구 시정촌을 말함) 구역인 것</p> <p>(2) 인구 조건(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 인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a), (b), (c)의 경우, 平成7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제외함.)</p> <p>(a)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임.</p> <p>(b)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 이상임.</p> <p>(c)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이면서, 15세 이상부터 30세 미만 인구 비율이 11% 이하임.</p> <p>(d) 平成7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23% 이상임.</p> <p>(2) 재정력 조건 平成30년부터 令和2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64 이하이면서, 공영경기수익이 40억 엔 이하임.</p> <p>【요건 2】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과소지역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p> <p>(1) 특정 기간 합병 관계 시정촌 구역인 것.</p>

유형	근거 규정	요건
		<p>(2) 인구 조건                      특정 기간 동안의 합병 관련 시군의 지역 인구가 昭和55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감소율이 25% 이상임. 다만, 平成7년과 令和2년의 국세조사 인구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제외함.</p> <p>(3) 재정력 조건                      平成30년부터 令和2년까지의 재정력 지수의 평균이 0.4 이하이면서, 공영경기수익이 40억 엔 이하임.</p>

출처: 総務省自治行政局過疎対策室. 2022. “過疎関係市町村都道府県別分布図.”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7380.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7380.pdf).

- 2022년 4월 전국 885개 시정촌이 과소 관계 시정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718개 시정촌의 51.5%에 이르는 수준임
  - 2022년 4월 기준 전부과소 713개, 일부과소 있는 시정촌 158개, 간주과소 14개 지정되어 있음
  - 과소 관계 시정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1,165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9.2%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238,762km<sup>2</sup>로 일본 국토의 63% 이상을 차지함
  - 과소지역이라고 하면 ‘정촌’에 집중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지만, 오타루시(11.1만 명), 요코테시(8.6만 명), 다이센시(7.8만 명)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에도 존재함(立岡 健二郎 2023)

| 그림 3-4 | 과소 관계 시정촌 분포도



출처: 総務省自治行政局過疎対策室. 2022. “過疎関係市町村都道府県別分布図.”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7380.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7380.pdf).

- 전부과소 시정촌은 비과소 시정촌에 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으며 재정력 지수가 낮은 특성을 지님
  - 전부과소 시정촌 인구는 1.2만 명으로 비과소 시정촌 11.3만 명의 10% 수준으로 적음
  - 전부과소 시정촌 평균 면적은 275km<sup>2</sup>로 비과소 시정촌 평균 면적인 127km<sup>2</sup>의 2.2배 정도로 넓음
  - 전부과소 시정촌 고령화율은 41.5%로 비과소 시정촌(29.6%) 대비 10%p 이상 높아 고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
  - 전부과소 시정촌의 재정력지수는 0.26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표준적 경비의 약 30%만 자체 세수 등으로 충당됨을 의미함

- 전부과소 시정촌 1인당 과세대상소득은 264만 엔으로 비과소 시정촌 310만 엔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순 없으며, 일부 지역은 비과소 시정촌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기도 함

【표 3-5】 전부과소 시정촌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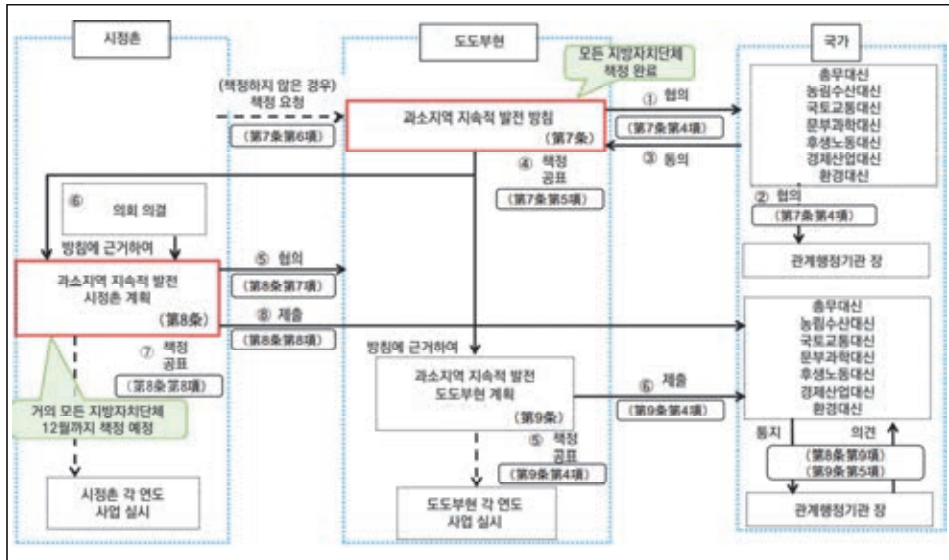
(단위: 만 명, km<sup>2</sup>, %, -, 만 엔)

구분	인구	면적	고령화율	재정력지수	1인당 과세대상소득
전부과소 시정촌	1.2	275	41.5	0.26	264
최대값	11.1	1,408	65.2	0.52	553
최소값	0.02	4	18.3	0.06	212
비과소 시정촌	11.3	127	29.6	0.73	310
전 시정촌	6.8	217	34.9	0.51	288

주: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수치는 모두 평균값을 나타냄  
출처: 立岡 健二郎(2023)의 [표 4]

- 과소대책 조치를 받기 위해 도도부현 방침과 도도부현 및 시정촌 계획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은 책정 흐름도에 따라 수립됨

【그림 3-5】 과소지역 방침 및 계획 책정 흐름도



출처: 令和3年度第1回過疎問題懇談會, 2021. “過疎対策の概要について.”

- 과소법에 근거한 조치로는 재정, 행정, 금융, 세법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 재정상 조치로는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과소대책 사업채가 있음
  - 행정상 조치로는 기간도로 도도부현 대행, 의료 확보, 교통 확보, 고령자 복지 증진, 교육 충실, 하수도 사업 도도부현 대행, 정보 유통 원활화, 지역 문화 진흥, 이주·정주 촉진 등, 관광 진흥 등, 취업 촉진, 생활환경 정비, 보육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한 주민 부담 경감,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규제 검토 등이 있음
  - 금융상 조치로는 주택금융공고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이 있음
  - 세법상 조치로는 감가상각 특례, 지방세 과세 면제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에 의한 감수 보전 등이 있음
- 이 중 과소대책 사업채는 폭넓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리상환금에 대한 교부세 조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음(立岡 健二郎 2023)
  - 과소대책 사업채는 과소 시정촌이 계획에 근거해 실시하는 사업 재원으로서 특별히 발행이 인정된 지방채임
  - 총당률은 100%(사업비 전액을 채권으로 조달할 수 있음)이며, 원리상환금의 70%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입함
  - 산업진흥시설, 복지시설, 교통통신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이나 교통수단 확보, 지역 의료 확보, 마을 유지 및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지방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21년 지방채계획액은 5,000억 엔(전년 대비 300억 엔, 6.4% 증가)
- 과소법에 근거한 조치 외에도, 과소 시정촌을 지원하는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 교부금(過疎地域持続的発展支援交付金)’, ‘지역 부흥 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취락지원원(集落支援員)’ 등 제도가 준비되어 있음
  -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 교부금은 과소지역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여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2021년 예산액은 7.8억 엔이었음
-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 교부금은 다음 네 개 사업을 지원함

-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 사업(S/W)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작은 거점(小さな拠点)’ 형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기간 취락을 중심으로 주변 취락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마을 네트워크권(작은 거점)’에 있어서 지원 운영조직 등이 실시하는 생활 지원 대처나 다른 활동을 지원함
  -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 사업(S/W)은 과소지역 과제 해결을 도모해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대처로서, 과소 시정촌이 실시하는 ICT 등 기술 활용 사업,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함
  - 과소지역 취락 재편 정비 사업(H/W)은 과소 시정촌이 과소지역 취락을 재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주 촉진단지 정비사업, 정주촉진 빈집 활용사업, 마을 이전 사업 등을 지원함
  - 과소지역 유희시설 재정비 사업(H/W)은 과소 시정촌이 과소지역에 있는 유희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 간 교류 및 지역 진흥, 지역과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정비를 지원함(예: 일하는 장소 정비 사업, 지역 운영조직 등 커뮤니티 거점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 등)
- 지역 부흥 협력대는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동 거점을 옮긴 자가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동 거점을 옮긴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부흥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에서 3년 사이임
  - 지역 발전 협력대원은 도시에서 과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제품 개발, 판매, 홍보를 지원하고, 농업·임업·수산업에 종사하며,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 활동을 수행함
- 취락지원원은 과소지역 취락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노하우를 지닌 인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과소지역 취락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취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인재들이 마을 순회 및 현황 파악, 주민 간 대화 촉진 등을 통해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을 끝어나갈 지역 운영조직 등을 지원함

- 취약지원원은 지방자치단체 위촉을 받아 공무원과 협력하여 활동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소지역을 ‘전부과소’, ‘간주과소’, ‘일부과소’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유형 간 지원 조치에 차등을 두거나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아님
- 과소대책은 1970년부터 시행된 정책이지만,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의 큰 프레임워크 안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
  - 2014년 1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 최초로 발표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 8월 3일 총무성에서 ‘과소지역에서 지방창생에 대하여’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 방침에 “중산간(中山間) 지역 등에는 ‘작은 거점’을 형성하여 일상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취락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총무성은 과소대책을 취락생활권 유지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위치시키고 있음

#### □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

- 일본 정부는 공통의 사회과제가 있거나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역의 모습이 동일한 경우 지역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지역 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역 간 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 간 데이터 연계와 공유를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협력을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음
-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는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를 목표로 제시하여,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작은 거점’ 형성 지원, ②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방도시에 있어서 경제·생활권 형성, ③대도시권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확보, ④기존 스톡 경영 강화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함(표 3-6 참고)

【표 3-6】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기본목표 및 주요시책

기본목표	주요시책
지방의 안정된 고용을 창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 횡단적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창업 지원, 중핵기업 지원, 지역혁신 추진, 대내 직접투자 촉진, 금융 지원</li> </ul> </li> <li>•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향상, 농림수산업 성장 산업화, 관광, 로컬팬 쿨재팬, 고향 명물, 문화·예술·스포츠</li> </ul> </li> <li>• 지방으로의 인재환류, 지방에서의 인재육성, 고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 지원 센터' 정비·가동</li> <li>- '프로페셔널 인재 센터' 가동</li> </ul> </li> </ul>
지방에 새로운 사람 흐름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이주 촉진 센터' 개설, 이주 정보 일원 제공 시스템 정비</li> <li>- '지방 거주 추진 국민회의'(지방 거주(두 지역 거주 포함) 추진)</li> <li>- '일본판 CCRC' 검토·보급</li> </ul> </li> <li>• 지방 거점 강화, 지방 채용·취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지방 거점 강화 등</li> <li>-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li> <li>- 원격근무(위성 사무실, 텔레워크) 촉진</li> </ul> </li> <li>• 지방대학 등 창생 5개년 전략</li> </ul>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을 이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고용 대책 추진, 정사원 실현 가속</li> <li>• 결혼·출산·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세대 포괄 지원 센터' 정비</li> <li>- 아이·육아 지원 충실</li> <li>- 다자녀 가구 지원, 3세대 동거·근거 지원</li> </ul> </li> <li>•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 밸런스)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휴업 취득 촉진, 장시간 노동 억제, 기업 대처 지원 등</li> </ul> </li> </ul>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거점'(다세대 교류·다기능형) 형성 지원</li> <li>• 지방도시에 있어서 경제·생활권 형성(지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콤팩트화와 주변 등 네트워크 형성</li> <li>- '연계중추도시권' 형성</li> <li>-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li> </ul> </li> <li>• 대도시권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확보</li> <li>• 기존 스톡 경영 강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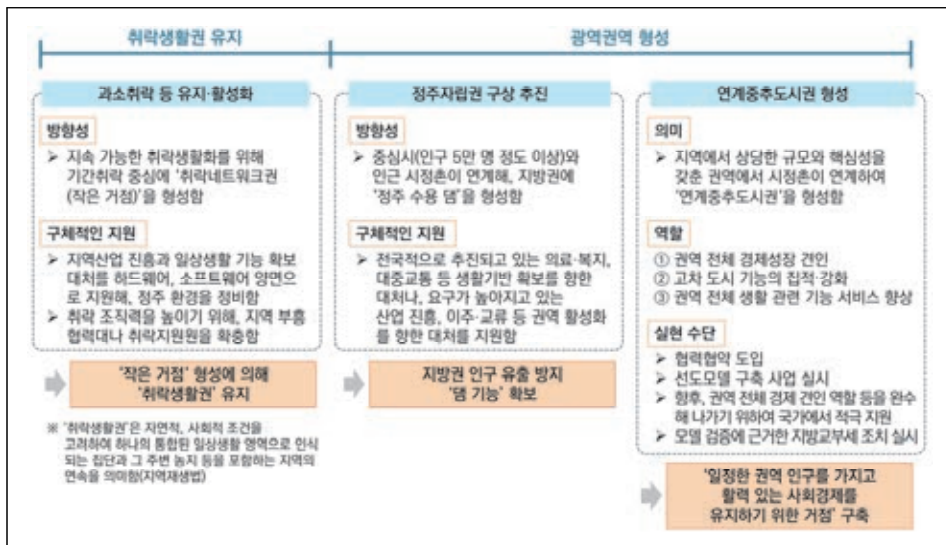
출처: 閣議決定. 2014.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と「総合戦略」の全体像等.”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20141227siryou1.pdf>.

○ 이에 따라, 과소취락 유지·활성화,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새로운 권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는 과소취락에 대해 기간 취락을 중심으로 취락네트워크권을 형성하여 '취락생활권(작은 거점)'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함
- 지방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구 5만 명 정도인 중심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정촌이 연계한 '정주자립권'을 형성함
- 지방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차 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상당한 규모와 핵심성을 갖춘 권역을 만들기 위해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함

| 그림 3-6 | 다양한 '권역' 만들기 계획



출처: 令和3年度第1回過疎問題懇談会, 2021. “過疎対策の概要について.”

- 작은 거점, 정주자립권, 연계중추도시권 사업별 개념, 대상 지역 현황, 총무성 지원내용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작은 거점’은 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취락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집약과 주변 취락과 교통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형성하는 취락네트워크권 내 중심지를 의미함
- ‘정주자립권’은 중심지의 도시기능, 근린 시정촌의 농림수산업,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 각 지역 매력 활용을 통해 지방 인구 유출 방지의 댐 역할을 하는 권역을 의미함

- ‘연계중추도시권’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차도시 기능 집적 및 강화, 생활 관련 기능 서비스 향상 등을 목표로 한 광역권을 의미함

【표 3-7】 일본 지방창생 지역 간 연계사업 개요

사업명	개념	대상 지역	총무성 지원내용
작은 거점 (小さな拠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거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음</li> <li>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 생활권 내 중심지를 작은 거점으로 지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락생활권 범위는 초등학교 통학 구역 정도인 경우가 다수</li> <li>시정촌 종합전략 상 위치가 지정된 작은 거점 1,538 개소(2023년 5월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거점’의 양적 확장과 질적 향상</li> <li>‘작은 거점’ 사업의 효율적 이행 추진</li> <li>‘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실시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했을 경우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 특별 조치 활용 촉진</li> </ul>
정주 자립권 (定住 自立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댐 역할을 하는 권역</li> <li>중심시의 도시기능, 근린 시정촌의 농림수산업,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 각 지역의 매력 활용한 권역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심시(인구 5만 명 이상)와 인근 시정촌 상호 협력</li> <li>130개 권역 형성(2023년 11월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주자립권에 대해 지방재정 조치, 선도 사례 정보 제공, 보조 사업 채택 시 고려 등을 통해 지원</li> <li>지역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심시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해 정보 제공</li> </ul>
연계 중추 도시권 (連携 中枢 都市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 견인, 고차도시 기능 집적·강화, 생활 관련 기능 서비스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광역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중추도시(인구 20만 명 이상)와 인근 시정 상호 협력</li> <li>40개 시 연계중추도시 선언(2023년 4월 기준)</li> <li>38개 권역 연계중추도시권 형성(2023년 4월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치나 위탁 사업, 지역 간 협력 선도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보조사업 채택 시 고려 등을 통해 지원</li> <li>주민 생활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광역 협력 노력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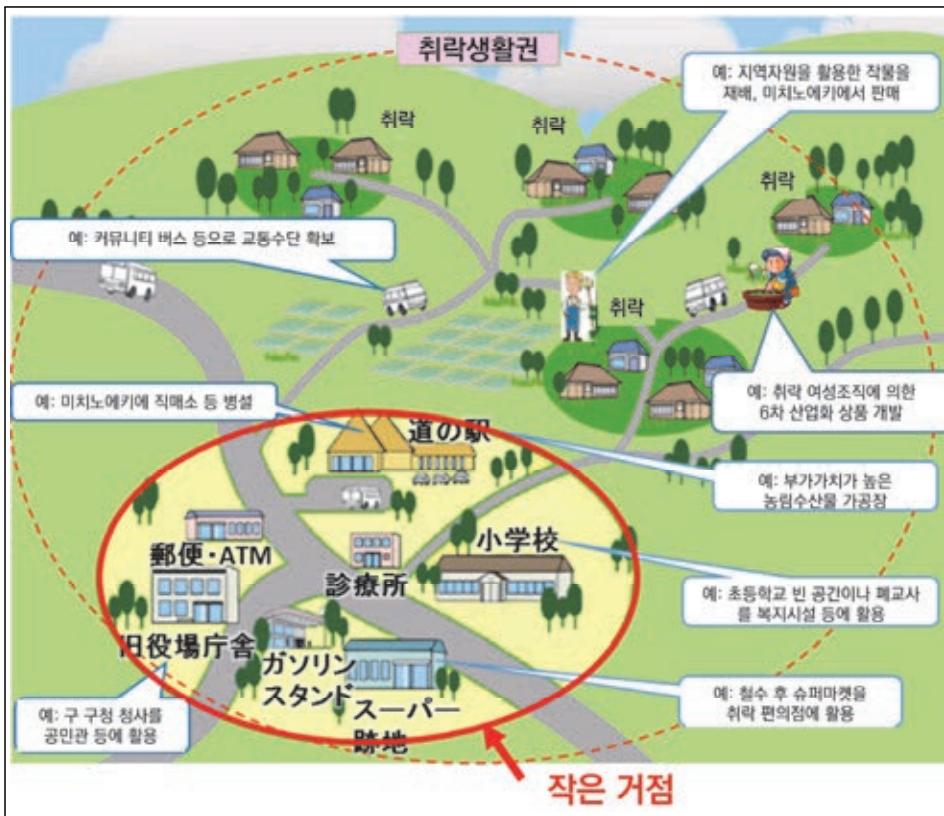
출처: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https://www.soumu.go.jp>.

閣議決定. 2020.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20 改訂版).”

- 작은 거점을 포괄하는 취락생활권 범위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통학 구역 정도인 경우가 다수이며, 2023년 5월 기준 시정촌 종합전략 상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작은 거점은 1,538개소로 나타남
  - [그림 3-7]은 취락생활권과 작은 거점 개념도를 나타냄
  - 취락생활권은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권역을 의미함

- 작은 거점은 취락생활권 내에서 미치노에키(일본의 공공도로 휴게소), 초등학교, 구청청사, 슈퍼마켓, 주유소 등 생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변 취락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함
- 취락생활권과 작은 거점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는 과소 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을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음

[그림 3-7] 취락생활권과 작은 거점 개념도



출처: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3. “令和5年度小さな拠点の形成に関する実態調査調査結果.”

- 정주자립권은 인구 5만 명 이상인 중심시와 인근 시정촌이 생활 실태나 미래상을 감안해 협정을 맺음으로써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권역을 말하며, 2023년 11월 기준 130개 권역이 형성되어 있음

- [그림 3-8]은 정주자립권 개념도를 나타냄
- 중심시는 인구 5만명 정도 이상(최소 4만 명 초과)이어야 하며 주야간 인구 비율이 1 이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에 대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함
- 근린 시정촌은 중심시와 근접해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등에 있어서 관계를 갖는 지역이어야 함
- 협정에 기반한 상호연계를 통해 중심시는 근린 시정촌에 의사를 파견하거나 농산물을 구매하고 근린 시정촌은 중심시 도시기능을 활용하는 등 상호 협력함

|그림 3-8| 정주자립권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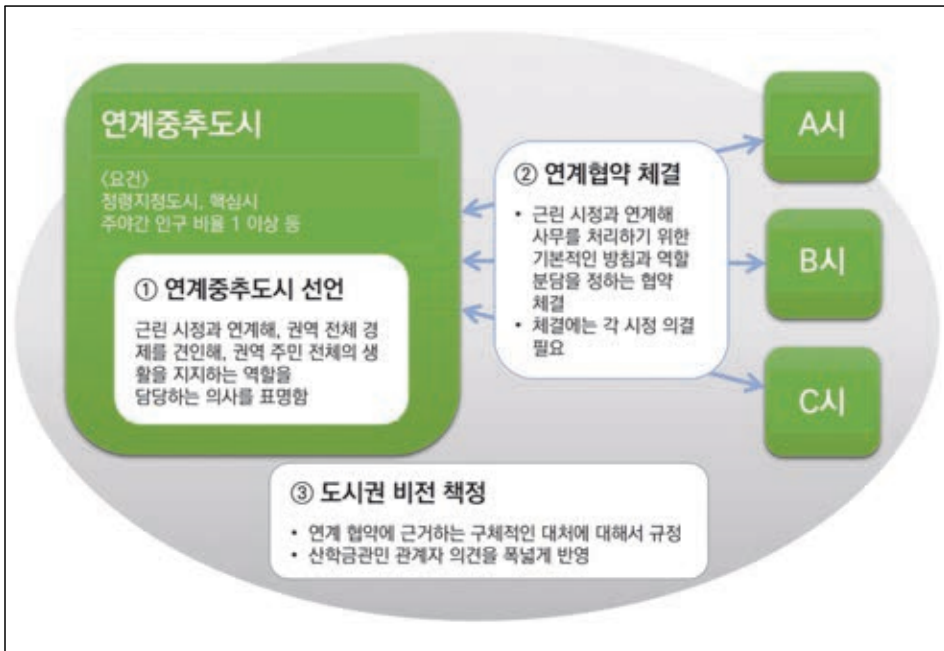
출처: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teizyu/inde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teizyu/index.html).

○ 연계중추도시권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연계중추도시와 인근 시정이 연계협약을 체결한 권역을 의미하며, 2023년 4월 기준 38개 권역이 있음

- [그림 3-9]는 연계중추도시권 개념도를 나타냄

- 연계중추도시는 정령지정도시 혹은 핵심시이고 주야간 인구 비율이 1 이상이어야 하며, 근린 시정과 연계해 권역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해 권역 주민 전체의 생활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근린 시정과 연계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에는 각 시정의 의결이 필요함
- 도시권 비전을 책정하여 연계 협약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대처에 대해 규정하고 산학금관민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함

| 그림 3-9 | 연계중추도시권 개념도



출처: 일본 히메지시 웹사이트. <https://www.city.himeji.lg.jp/shisei/0000006495.html>.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역 연계 제도를 활용하면서 지역 간 광역 연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현상 분석도 그 연계 영역을 단위로 실시해 과제를 추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판 종합전략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음

### 3. 정보·재정·인재 지원

#### □ 정보 지원

- 지방관 종합전략 수립 시 지역 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정책 근거, 수치 목표, KPI 설정, 정책 효과 검증 등 증거 기반 정책 기획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관 종합전략 수립 및 개정에 있어 지역 데이터 활용 상황을 추적하고, 지역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SAS)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

**【 표 3-8 】** 일본 지방창생 관련 지역 데이터 활용 촉진 시스템

시스템명	내용
지역경제분석시스템 (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 (RESAS)	• 지역의 인구 동향, 산업 구조, 인구 이동 등의 데이터를 지도나 그래프로 쉽게 표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V-RESAS	• 인구 이동, 소비, 음식 및 음식점 동향 등의 실시간 지역 경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쉽게 표시하여, 지역 경제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
지역과제 분석 네비게이션 (地域課題分析ナビゲーション)	• 데이터 분석의 시각과 흐름을 소개하는 네비게이션 자료 •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경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역의 해결 과제를 도출하고 적절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참고 자료 제공
RESAS Portal	• RESAS나 V-RESAS 등 지역 경제 데이터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포털 사이트 • RESAS나 V-RESAS의 조작 방법, 데이터 활용 사례, 데이터 분석의 시각과 흐름을 소개하는 지역 과제 분석 네비게이션 게시

출처: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内閣府地方創生推進室. 2022. “地方版総合戦略の策定・効果検証のための手引き(令和4年 12 月版).”

## □ 재정 지원

-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창생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창생 관련 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宮下 量久 2018)
- 첫째,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交付金)
  - 지방창생 추진 교부금(지방창생 정비 추진 교부금, 지방창생 거점 정비 교부금)과 지역활성화 촉진 지불금을 합쳐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으로 통합됨
  - 지방의 사회과제 해결, 매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에 대해 여러 부문을 대상으로 지원함
  - 2022년 창설된 이 교부금은 800억 엔 계상되었으며, 2023년에는 1,000억 엔 계상됨

표 3-9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 유형

유형	내용
디지털 실장 유형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 활성화와 행정 및 공공 서비스 고도화,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구현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지방창생 추진 유형	• 관광이나 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대처 등 지원(예: 지방판 종합전략에 자리잡은 지방자치단체 자발적, 주체적 대처를 지원(최장 5년간), 도쿄권으로부터 UIJ턴 촉진 및 지방 담당자 부족 대책, 부처의 소관을 넘는 두 종류 이상의 시설 일체 정비 등)
지방창생 거점 정비 유형	• 관광이나 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창생 도움 거점 시설 정비 등 지원 (예: 휴게소 인접한 관광 거점 육아 지원 시설, 스타트업 지원 시설 등)
지역산업구조 전환 인프라 정비 추진 유형	• 산업구조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반도체 등 대규모 생산거점 정비에 대해 관련 인프라 정비에 기동적이고 추가적인 지원 창설

출처: 일본 지방창생 웹사이트. <https://www.chisou.go.jp>.

- 둘째,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사업비(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事業費)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지방창생에 임함과 동시에 지역 실정에 따른 디지털 실장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 세출에 소요액을 계상함

- 2023년 지방재정계획 세출에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사업비’ 1조 2,500억 원을 계상함
  - 지방창생 추진비 1조 원과 지역 디지털 사회 추진비 2,500억 원을 계상함
  - 2023년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등의 과제에 대응해, 자주적·주체적으로 지방 창생에 임하기 위한 “거리·사람·일 창생 사업비”(2022년 1조엔)에 대해서, “지방 창생 추진비”로 명칭 변경한 후, 이것과 「지역 디지털 사회 추진비」(2023년 2,500억엔)를 내역으로 하여,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사업비」(2023년 1조 2,500억엔)을 창설
- 셋째, 지방창생 응원세제(地方創生応援税制)(별칭 ‘기업판 고향납세(企業版ふるさと納税)’)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방창생 대처에 대한 기업 기부에 대해 법인 관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임
  - 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판 종합전략을 작성하고 지방판 종합 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하면, 기업이 이 지역 재생계획에 대해 기부하고 기업 관련 국세(법인세), 지방세(법인 주민세, 법인 사업세) 등 세액공제를 받는 흐름으로 이뤄짐
  - 이주·정주 및 인재 육성·확보, 피해지역 복구 등 사업을 촉진하는 등 우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 단체 수 및 기부액 모두 확대 여지가 크다고 평가됨
  -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해서는 기업과 지방 공공단체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구조가 되도록, 세금 감면 효과를 기부액의 최대 약 90%로 하고 기부금을 활용한 위성 오피스 조성 등을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넷째, 지방 거점 강화 세제(地方拠点強化税制)
  -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지역에서 본사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역 재생계획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도부현 지사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세제 특례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임



- 기업이 본사 기능을 이전하거나 지방 기지를 강화하기 쉽도록, 2022년 개정에서는 세제의 적용 대상인 사업 부문에 ‘정보 서비스 사업 부문’을 추가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기지에서 고용자 증가수가 1명이라도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함
- 아래 표와 같이 확충형과 이전형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음

| 표 3-10 | 지방 거점 강화 세제 유형별 대상 및 지원내용

유형	대상	지원내용
확충형	지방에서 본사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피스 감세: 건물 등 취득가액에 대해서 특별상각 15%, 세액 공제 4%</li> <li>• 고용촉진세제 특례: 특정 업무 시설 당기 증가 고용자에 대해 이하와 같이 세액 공제</li> </ul>
이전형	도쿄 23구에서 지방에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피스 감세: 건물 등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25%, 세액공제 7%</li> <li>• 고용촉진세제 특례: 해당 특정 업무 시설의 당기 증가 고용자 1인당 50만엔 또는 20만엔 세액 공제, 이에 더해 도쿄 23구로부터 이전자를 포함한 당해 지방사무소의 당기 증가 고용자 1명당 30만엔 세액공제 추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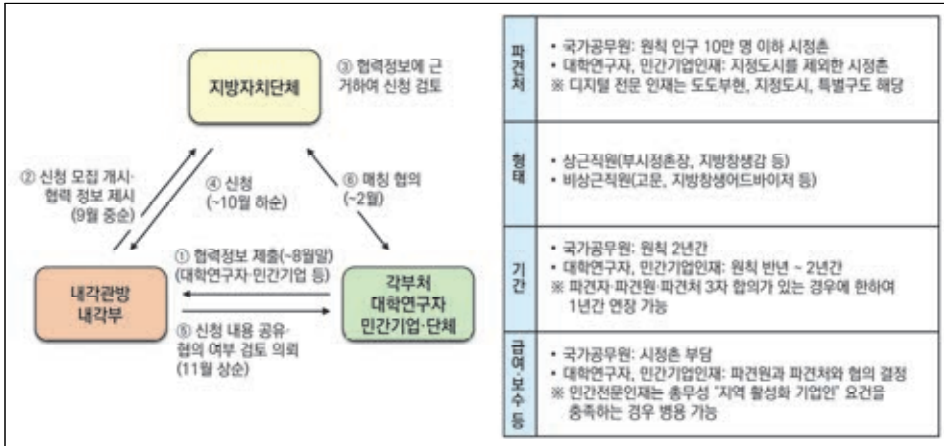
출처: 일본 지방창생 웹사이트. <https://www.chisou.go.jp>.

## □ 인재 지원

### ○ 지방창생 인재지원 제도(地方創生人材支援制度)

- 정부에서 지방창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재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 민간기업사원 등 종합적 또는 전문적 지식과 견해를 가진 인재를 부시정촌장이나 간부직원, 어드바이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노하우를 살려 지방창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 희망 신청을 받고, 각 부처, 대학,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 협의를 통해 인재를 지원함

〔그림 3-10〕 지방창생 인재지원 제도 개념도



출처: 일본 지방창생 웹사이트.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jinzai-shien/index.html>.

○ 지방창생 컨시어지(地方創生コンサルジュ)

- 지방창생에 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관계 부처 등과 연계하여 원스톱 상담 창구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상담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함

## 제3절 대만

### 1. 배경

#### □ 대만 인구감소 현황(國家發展委員會 2018)

- 2018년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가 발표한 ‘중화민국 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인구는 3~10년 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는 2017년 2,357만 명에서 2065년 1,735만 명으로 26%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 신생아 수는 2017년 19만 명에서 2065년 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 인구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65년 4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도시로의 노동인구 집중은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과 도시-농촌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6개 도시(타이베이, 가오슝,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 인구 비율은 2017년 전체 인구의 69.2%로 나타났으며, 2065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 대만 정부 대응 과정(國家發展委員會 2018)

- 국가 총인구 감소, 고령화 및 저출산, 대도시 인구 집중, 도농 불균형 발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대만 행정원(行政院)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거낙업(安居樂業)’, ‘생생불식(生生不息)’, ‘균형대만(均衡臺灣)’ 등 3대 정책 축을 발표했음
  - 안거낙업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직업을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생생불식은 대만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를 유치하여 꾸준한 발전을 이루는 것임

- 균형대만은 대도시와 농촌, 서쪽과 동쪽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대만 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임
- 행정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활성화 관련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원 지방창생협의회(行政院地方創生會報)를 구성하였고, 총통이 2018년 5월 21일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국가발전위원회에 ‘지방창생 국가전략계획(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음
- 2018년 11월 30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 2019년을 대만 지방창생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창생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으로 격상시켰음
- 2019년 1월 3일 행정원이 ‘지방창생 국가전략계획’을 승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방정부가 지방창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2018년 6월 ‘지방창생 국가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발전위원회는 중앙 부처,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참여시켜 총 2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자원 통합 방안, 지방정부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민간기업 의견을 청취했음
- 2020년 10월 지방창생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창생 추진 가속화 계획(2021~2025)(加速推動地方創生計畫)’(지방창생 2.0)이 공식적으로 승인 되었으며, 5년간 60억 대만 달러가 할당되었음
  - 신청 채널 확대, 지역 청소년 훈련 워크스테이션 설치, 공공공간 활성화, 지역 상담 센터 및 프로젝트 사무실 설치 등을 통해 지역혁신 자원을 통합하고 지역혁신을 촉진함
- 2024년 2월 국가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공복지, 공익을 핵심 정신으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공유되는 지방창생 계획(2025~2028)(打造永續共好地方創生計畫)’(지방창생 3.0)을 제출함

## 2. 행정 지원

### □ 법률적 근거

- 대만은 법률에 근거한 지방창생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음

### □ 추진 조직체계

- 행정원 지방창생협의회(行政院地方創生會報)
  - 총통이 조직자로 참석하며, 중앙정부 기관 및 지방정부 대표, 지방창생에 관심 있는 기업 책임자, 전문가, 학자로 구성됨
  - 지방창생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함
-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 대만 국가발전계획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행정원 산하에 있음
  -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획, 설계, 조정, 검토, 관리를 담당하며, 주로 인구 정책 수립, 인재 양성, 토지 보존, 지역균형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행정원 지방창생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력을 제공함
  - 행정원 지방창생협의회 관련 업무, 지방창생 사업 제안에 대한 매칭 플랫폼 역할, 기업 매칭, 성화 특별 계정 투자의 전반적인 계획 및 기관 자원 할당을 담당함
  - 관련 계획 및 실행 지원을 담당하며, TESAS(Taiwan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System) 설립, 지역 활성화 팀 형성, 지방정부에 지역 활성화 제안 제출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진행 및 연례 검토 등을 수행함
- 중앙부처
  - 관련 계획 및 보조금 규정의 검토를 통해 지역 활성화 전략 및 정신과 일치 하도록 조정하고 지역 활성화 작업을 지원함
  - 지방창생 사업 제안과 조정된 관련 규정의 실행을 조정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직할시(直轄市)·시(市)·현(縣))
  - 향(鄉)·진(鎮)·시(市)·구(區) 간 지방창생 사업 제안서를 기획함

- 지역 관련 자원과 매칭하여 지방창생 사업 제안을 지원함
- 지방창생특별계좌(地方創生專戶)를 개설함

○ 기초지방자치단체(향(鄉)·진(鎭)·시(市)·구(區))

- 지역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 합의를 형성하여 읍면동의 지역 활성화 비전을 설정함
- 지방창생 사업 제안서를 기획하고 제출함

□ 비전, 목표, 발전전략

- 비전은 2050년까지 인구를 2천만 명 이상 유지하고 국내 이동을 촉진하여 수도권 대도시의 압력을 완화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것임
- 목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6개 직할시(直轄市)에서 인구 집중 추세를 둔화시키는 것임

| 그림 3-11 | 대만 지방창생 비전, 목표,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발전전략		KPI		
			2019~2022				
2030 2022	균형 있는 인구 증가 촉진 ▶ 전국 총인구 2천만 명 유지 ▶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지역 인구 흐름 역류	지역인구 유입 = 유출	건강함 일 사람 순환 조성	지역 산업 최적화, 고용 기회 통합	① 지역 생산성 향상 ② 지방화한 채용 개발 ③ 지역인재 육성 ④ 기업가정신 장려	지역 고용기회 창출
	포용성장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인구 ▶ 국가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협력			도시 농촌 건강 순환 활성화 지원	마을 조성, 외진 지역 마을 활성화	① 마을 경제 활성화 ② 도시 및 농촌 기능 강화 ③ 안정적 유입 촉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수
					대만 브랜드 홍보, 국제 연계 확대	① 지역 전용 브랜드 구축 ② 지역 특산물 판매 ③ 관광 명소 단장	지역 브랜드 설립 수

출처: 國家發展委員會. 2019.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National Strategic Pla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슬라이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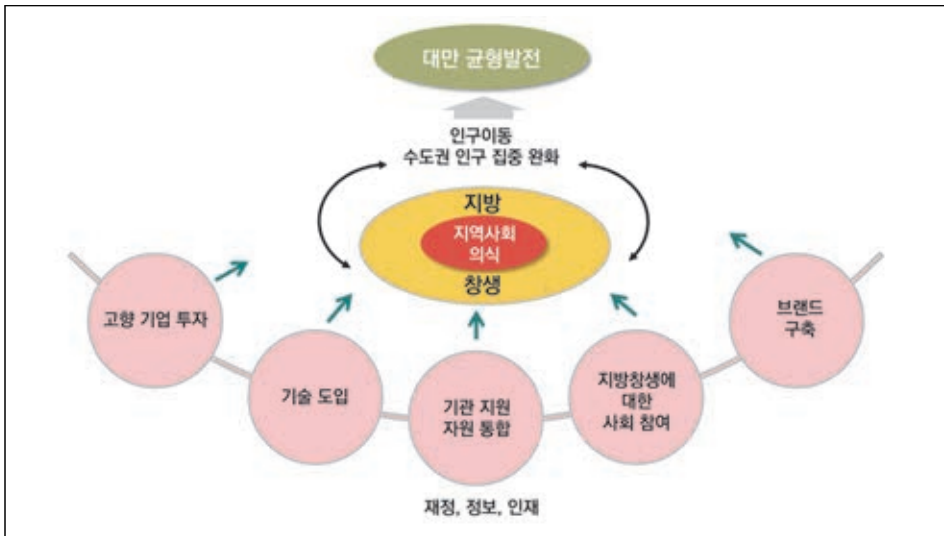
- 발전전략으로는 ‘산업 최적화를 통한 고용 기회 확보’, ‘읍면동 건설 및 외진 지역 활성화’, ‘지역 브랜드 홍보를 통한 국제적 연계 확대’ 등을 제시함
  - 첫째, 지역 산업 최적화를 통한 고용 기회 확대

- 지역 산업 최적화를 통해 고용 기회를 확보하여 일과 사람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경제 순환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인구 증가와 변영을 점진적으로 실현함
  -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독특한 제품 개발과 ‘지역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여 제품 가치를 높임
  - 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 개발을 최적화하고 생산성과 판매력을 증대시켜 창업을 유도함
- 둘째, 인프라 개선 및 도시와 농촌 지역 활성화
- 외진 지역에서 필수 서비스 및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원주민 지역 포함)에서 교육, 의료 및 관련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부 교통 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개선함
  - 중개도시가 도시와 농촌, 산·어촌(원주민 지역 포함)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하게 하려면 중개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비즈니스 영역의 쇠퇴를 방지하여 지역 산업과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하며, 도시에서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유도함
- 셋째, 지역 브랜드 홍보를 통한 국제적 연결 확대
- 특색 있는 지역 DNA를 발견하고 디자인 파워를 도입하여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독점 브랜드와 체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품 정체성과 부가가치를 높임
  - 기술 파워를 통해 지역 제품을 마케팅하고 국내 및 국제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함
  - 지역 자원을 통합하여 특색 있는 지역 여행을 촉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연계를 구축하고 국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함
  - 관광객에 의한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 산업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 인구 증가를 촉진함

□ 실행전략

- 지방창생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계획은 고향 투자 기업, 기술 도입, 기관 지원 자원 통합, 지방창생에 대한 사회 참여, 브랜드 구축 등 다섯 가지 주요 실행 전략을 추진함

| 그림 3-12 | 대만 지방창생 실행전략



출처: 國家發展委員會. 2019.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National Strategic Pla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슬라이드 자료.

- 첫째, 고향 기업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방창생 사업을 채택하여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함
  -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 자본, 경영 경험 및 능력을 활용하여 지방창생 사업을 직접 채택하고 지원함
  - 기업들은 지방창생 특별 자금계좌에 기금을 기부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창생 사업의 신제품 또는 사업 개발을 지원함
    - 지방창생 특별 자금계좌는 광역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개발회의(NDC), 광역 지방정부, 경제부처, 기부 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함
    - 투자 및 이익 반환을 통해 순환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됨



- 세제 혜택, 규제 조정 및 기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고향에 투자하고 지방창생 사업을 채택하도록 장려함
- 둘째, 기술 도입을 통해 지방창생 사업을 지원하고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함
  - 기술 도입을 통한 지방창생 사업을 지원함
    - AI+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생태계 등과 같은 기술 개발 기술을 도입하여 지방창생을 지원함
    - 생산, 제조, 마케팅, 브랜드 확립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지역 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도입함(예: 센서 및 환경 제어 시설을 활용한 농지와 어류 목장 품질 모니터링)
    - 원격 근무, 스마트 교통, 클라우드 교육, 재난 대응과 관련된 측면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함
  -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함
    - 외진 지역에서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적인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함
    - 외진 지역의 중소기업 디지털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바일 결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 ‘Civil IoT Taiwan’의 배치를 통해 최신 환경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함
- 셋째, 기관의 지원 자원을 통합하여 지역을 지원함
  - 정보, 재정, 인재 지원에 대해서는 “3) 정보·재정·인재 지원”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함
- 넷째, 지방창생에 대한 사회 참여를 유도함
  - 기업, 지역, 학계, 학교, 연구소, 법인 기관, 커뮤니티, 단체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인재들이 지방창생 사업에 참여하여 특색 있는 지역 DNA를 발굴하고 합의를 형성하고 지방창생 비전을 구축함
  - 중앙에서는 제안된 지방창생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창생 작업을 촉진함

○ 다섯째, 브랜드를 구축함

- 정부 및 관련 분야의 인재 지원을 받아 혁신적인 시각과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독특성과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와 지역 브랜드를 설정하여 지역 활력 자본으로 전환함
- 지역 자원 및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지역 문화 및 역사, 생산품 및 관광 명소 등에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 매력을 창출하고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함

□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地方創生優先推動地區) 지정

○ 인구변화율, 인구규모, 주민소득 등을 분석하고 자원 활용 우선순위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대만 전체 368개 행정구 가운데 134개 행정구를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地方創生優先推動地區)’으로 지정함

-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地方創生優先推動地區)은 주로 중부, 남부, 동부 등 6개 직할시가 아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이들은 전체 국토 면적의 66.5%를 차지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6%에 불과함
-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 지역 내 필수 시설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地方創生優先推動地區)은 자원 특성과 개발 여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그림 3-13]은 대만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 지도를 나타냄
- 첫째, 농산어촌(農山漁村)
  - 이 유형의 지역은 산악 및 해안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총 62개 향(鄉)·진(鎮)·구(區)가 이 유형에 해당함
  - 농업 및 어업 자원이 풍부하지만 인구가 매우 적고 청년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 발전이 어려운 지역임
  - 대책으로는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 외부 교통망을 개선하는 것,

노인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지역의 기본 생활 서비스와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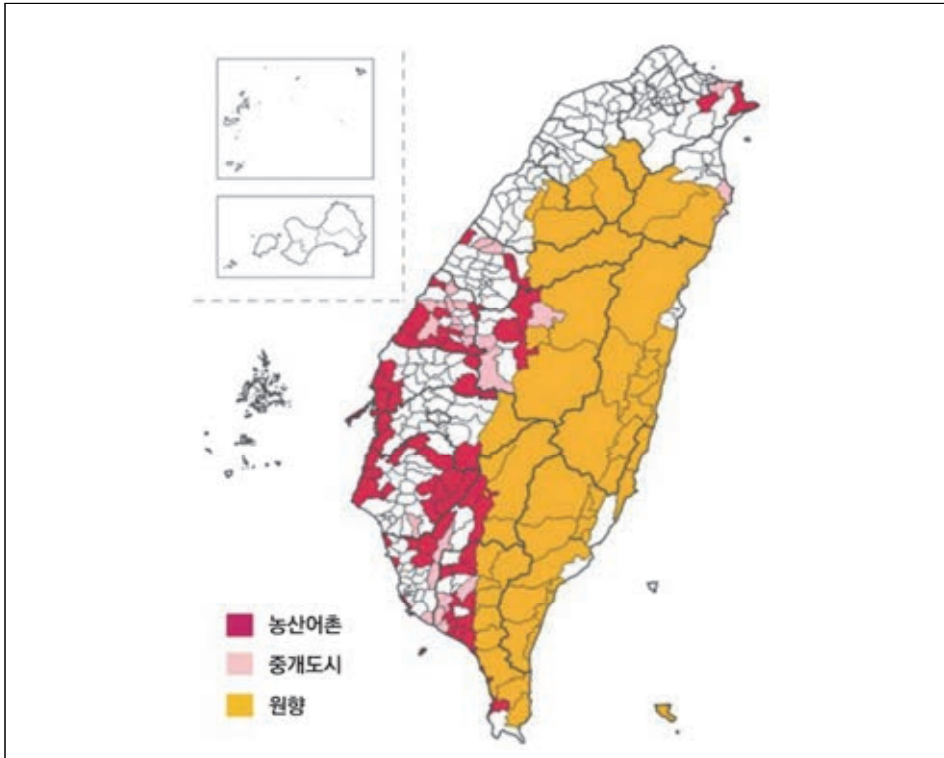
- 둘째, 중개도시(中介城鎮)

- 이 유형의 지역은 주로 대만 중남부의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원주민 지역 포함) 사이의 주요 생활 및 교육 핵심 지역으로, 총 24개 향(鄉)·진(鎮)·구(區)가 이 유형에 해당함
- 이 지역의 지역 블록은 오래되고 쇠락하고 있으며, 산업 고도화 역동성이 부족함
- 해당 대책은 중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원주민 지역 포함)을 연결하여 기존의 오래된 지역 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업 활동을 촉진해야 함

- 셋째, 원향(原鄉)

- 이 유형의 지역에는 총 48개 향(鄉)·진(鎮)·구(區)가 있으며, 모두 원주민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들은 55개 기존 원주민 지역의 거의 90%를 차지하며, 주로 중앙 산맥과 대만 동부에 위치하고 있음
- 토지 개발에 제약이 있으며,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청년 취업 기회가 부족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음
- 대책 측면에서는 지역 내 고용 지원이나 사업 창업을 돕고, 전문 인재를 산업 발전에 맞게 유치하며, 교육, 의료 및 외부 교통망과 같은 공공서비스 및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13]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 지도



출처: 國家發展委員會. 2018.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核定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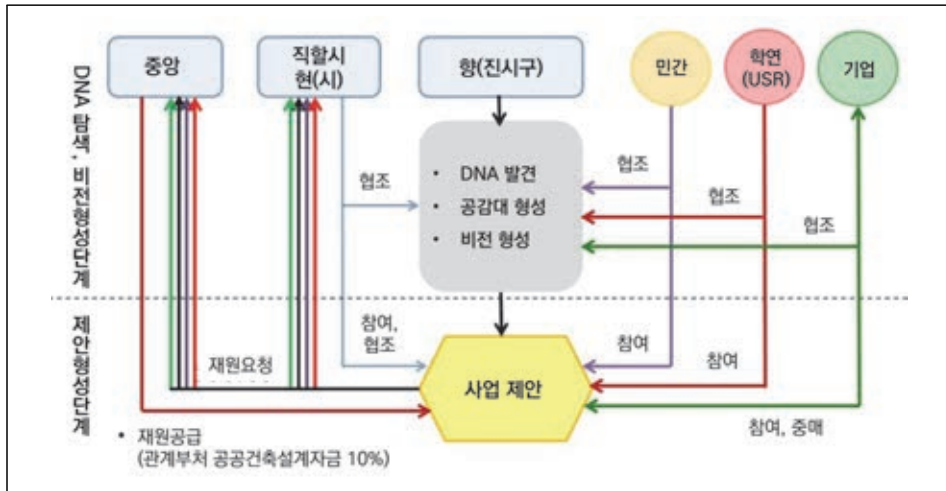
### □ 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

○ 지역 발전 현황에 따라 하향식 또는 상향식 방법을 채택함

- 첫째, 향(鄉)·진(鎭)·시(市)·구(區)를 단위로 한 하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제안서를 기획하고 추진함
- 둘째, 여러 향(鄉)·진(鎭)·시(市)·구(區)에 걸친 범위를 대상으로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지역형: 자원 보완성, 잠재적 협력 개발, 공공서비스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 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창생 사업을 제안함(예: 난터우현(중개도시) 푸리를 중심으로 귀싱, 유치, 런아이 등 주변 향과 협력하여 지방창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주제형: 중앙 또는 지역 정책과 지역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주제의 지방창생 사업을 제시함
- 지방창생사업 제안 과정은 2단계로 구성됨
- 제1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주도하여 지역 DNA를 탐색하고 지방창생 비전을 형성함
    - 지역 자원과 독특한 특성을 조사하고 식별함
    - 지역 세미나나 합의 형성 워크숍을 통해 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합의를 이끌어내며, 인구, 고용, 소득, 교육 관련 주요 성과 지표(KPI)를 포함한 지방창생 비전을 수립함
  - 제2단계에서는 산·관·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함
    - 산업, 정부, 학계, 연구 기관, 시민 사회 기관이 협력하여 지방창생 사업 제안서를 작성함
    -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주제, 지역 DNA, 이해 관계자 참여, 프로젝트 개념, KPI 기여 방안, 필요한 자원과 지원 계획이 포함됨

| 그림 3-14 | 지방창생사업 제안 과정



출처: 國家發展委員會, 2018.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核定本).

### 3. 정보·재정·인재 지원

#### □ 정보 지원

- 지방창업 계획을 지원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각 수준의 지방 정부가 지방창업 사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ESAS(Taiwan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System)가 설립될 예정임
- 이 시스템은 공공 및 민간 통계, 지도 정보를 통합하여 대만 각 지역의 인구 이동, 경제 발전, 지역 건설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지방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임

#### □ 재정 지원

- 관련 기관의 자원 중복 투입을 피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자원을 통합하여 지방창업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함
  - 자산 조사 후, 11개 기관의 37개 계획을 통합하여 지방창업 사업을 공동으로 시작함
  - 이후 필요에 따라 지방창업 사업 제안에 적절한 예산이 할당되며, 관련 계획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지방창업 전략에 부합하도록 함
- 국가개발기금은 산업 혁신과 전환 기금, 벤처 투자 기금, 엔젤 투자자 프로그램, 다양한 협력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각 프로젝트 금액의 투자 비율을 높이며, 이를 통해 지방창업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
- 벤처 자본 자금은 민간부문 파트너와의 공동 투자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될 예정임
- 지방창업 사업이 자금 조달을 얻을 수 있도록 대만 중소기업 보증기금과의 신용 보증 제공도 논의될 것임
- 기관들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대출을 제공하여 지방창업 사업의 실행을 지원함

- 과거의 '계획 예산 보조금' 종료로 인한 계획 종료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계획은 '보조금 대신 투자' 접근법을 따름

#### □ 인재 지원

- 지역에는 인재와 인력이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재 지원함
- 중앙정부 공무원, 은퇴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력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 공무원들의 고향 채택, 교환,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립함
  - 또한, 은퇴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력은 지역이 지방창생 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됨
- 대학 사회 책임(USR) 프로그램을 통해 비전 설정을 지원함
- 지방창생 서비스 팀을 설립하여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함
  - 국가개발회의(NDC)는 지방정부, 학계 및 연구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창생 서비스 팀을 구성하고, 지방창생 작업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것임

## 제4절 소결

### 1. 행정 지원

○ [표 3-11]은 일본 및 대만 사례조사 결과를 비교한 표를 나타냄

[표 3-11] 일본 및 대만 사례 조사결과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li> <li>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li> <li>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li> <li>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li> <li>부처 간 연계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적 근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제정</li> <li>추진 조직체계: 내각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중앙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li> <li>지역계획 수립: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전략 수립</li> <li>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 작은 거점(생활서비스 유지 기능), 정주자립권(중심시와 이와 연계된 근린 시정촌), 연계중추도시권(광역 경제권)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 부재</li> <li>추진 조직체계: 행정원 지방 창생협의회, 국가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li> <li>지역계획 수립: 종합계획이 아닌 비전 도출 및 개별 사업 제안서 작성</li> <li>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 지정: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li> <li>지역 간 기능적 연계 방안: 장소 기반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연계 강화</li> </ul>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교부세 지원</li> <li>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li> <li>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li> <li>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li> <li>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 디지털 기술로 지방 활성화 지원</li> <li>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지방창생 지원</li> <li>지방창생 응원세제 (별칭 ‘기업판 고향납세’): 기업 기부 시 세액 공제 제공</li> <li>지방 거점 강화 세제: 본사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기관 자원 통합 자원 중복 투입을 피하기 위해 11개 기관의 37개 계획 통합</li> <li>적절한 예산 할당: 필요에 따라 지방창생 사업 제안에 예산 배정 및 지속적 검토·조정</li> <li>국가개발기금 투자 강화: 산업 혁신 기금, 벤처 투자 기금, 인텔 투자자 프로그램, 협력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비율 증가</li> <li>벤처 자본 자금 설립: 민간부문 파트너와 공동 투자</li> <li>신용 보증 제공 논의: 대만 중소기업 보증기금과 협력</li> <li>정책 대출 제공: 은행과 협력하여 지방창생 사업 실행 지원</li> </ul>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 통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지역 특성 분석 지원</li> <li>V-RESAS: 실시간 지역 경제 데이터 제공</li> <li>지역과제 분석 네비게이션: 지역 과제 도출 및 정책 검토 지원</li> <li>RESAS Portal: 데이터 활용 안내 포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SAS 구축: 지방창생 계획 지원 및 평가, 통합 데이터 제공</li> </ul>
인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컨설팅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창생 인재지원 제도: 국가공무원, 연구자, 민간기업 인력 파견</li> <li>지방창생 컨시어지: 인재와 자원 매칭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인력 지원</li> <li>은퇴 인력 지원</li> <li>대학 사회 책임(USR) 프로그램</li> <li>지방창생 서비스 팀 설립: 안내 및 상담 제공</li> </ul>

- 한국은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처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담당하며, 일본과 대만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조정을 위해 각각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와 ‘행정원 지방창생협의회’를 설립함
  - 한국에서는 중앙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담당하며, 중앙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일본과 대만은 중앙 관계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와 ‘행정원 지방창생협의회’를 각각 설립하여, 중앙부처, 지방정부 간 조정을 전담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기본계획 수립, 일본은 모든 지역에서 종합전략 수립, 대만은 비전과 개별 사업제안서 작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일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각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대만은 종합계획이 아닌 각 지역에서 비전 도출과 개별 사업제안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만은 지방 창생 우선추진 지역을 지정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별도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음
  - 한국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일본은 별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음
  - 대만은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 지정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연계·협력 방향을 강제하지 않고, 일본은 다양한 권역 형성을 지원하며, 대만은 상향식으로 지방창생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
  -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연계·협력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하향식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지방에 작은 거점(생활서비스 유지 기능), 정주자립권(중심시와 이와 연계된 근린 시정촌), 연계중추도시권(광역 경제권) 등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만은 여러 지역에 걸친 지방창생사업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 재정 지원

- 한국, 일본, 대만은 모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한국, 일본, 대만은 공통적으로 지역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본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만은 지방창생사업 제안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한국, 일본은 지방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함
  - 일본은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 거점 강화 세제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외에도 ‘지방창생 응원세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업이 지방창생 사업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지방창생 응원세제’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임
  - 이는 민간 자본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부와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음
- 대만과 같이 벤처 자본 활성화, 신용 보증 제공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음
  - 대만은 벤처 자본 자금 설립과 신용 보증 제공으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벤처 자본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도 대만의 정책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 대만은 지방창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 대출로 지원하고 있음
  - 은행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3. 정보 지원

- 한국은 생활인구, 지역 특성 통계 제공 등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본과 대만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일본은 RESAS, V-RESAS, 지역과제 분석 네비게이션, RESAS Portal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제공, 과제 도출 및 정책 검토, 데이터 활용 안내 등 종합적인 데이터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대만은 TESAS를 통해 지방창업 계획 지원 및 평가, 통합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음
- 한국은 기본적인 통계 제공을 넘어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데이터 제공, 과제 도출 및 정책 검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인재 지원

- 한국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임
- 일본은 공무원, 연구자, 민간기업 인력을 파견하고, 인재와 지역을 매칭하는 컨시어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대만은 공무원과 은퇴 인력을 활용하고, 지방창업 서비스 팀을 통해 지역에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함
- 한국도 다양한 인재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가 컨설팅 외에도 인재 파견, 자원 매칭, 대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선정 기준 마련

제1절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및 지원  
필요성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제3절 관심지역 선정 방향 및 기준(안)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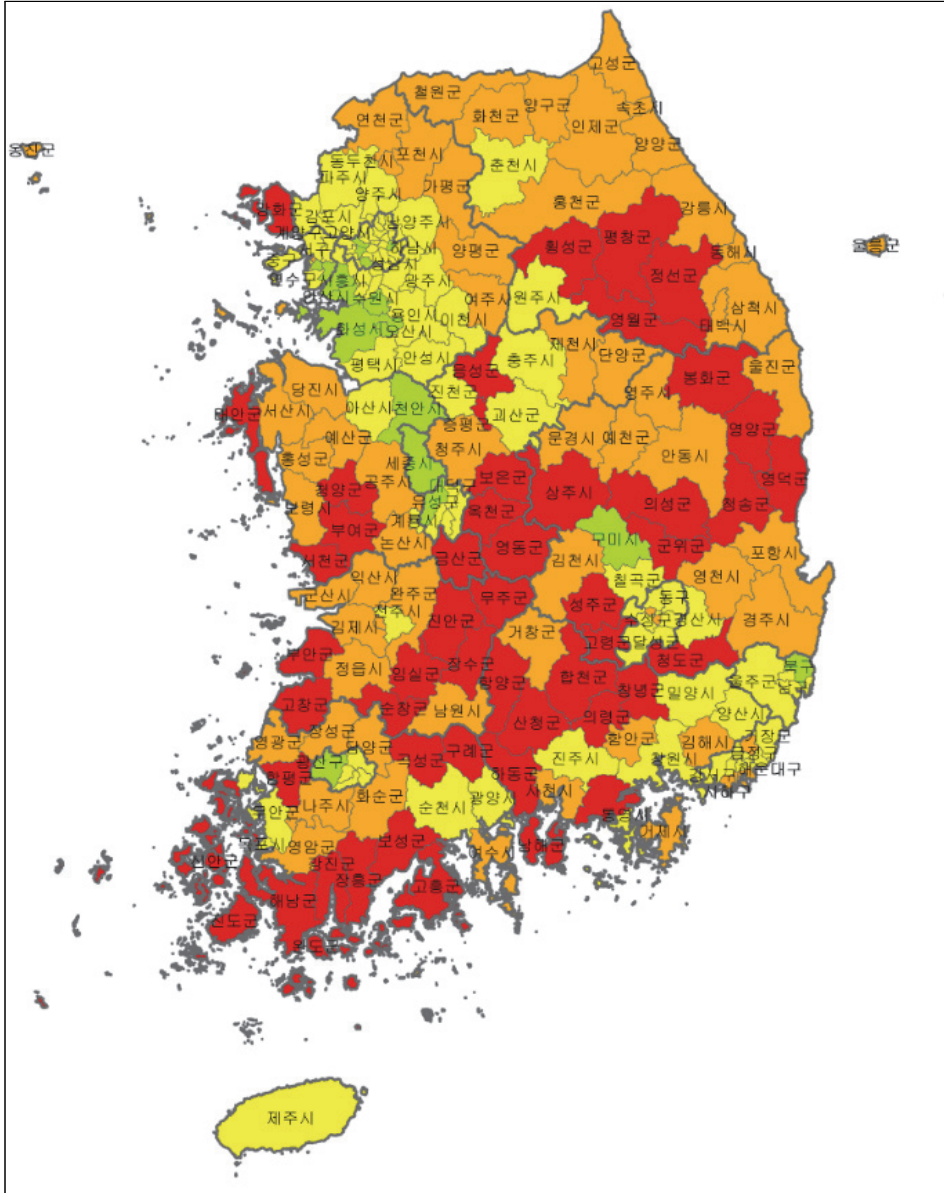
# 04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선정 기준 마련

## 제1절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및 지원 필요성

### 1.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대두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 여주시 역시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속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4-1] 참고)
    - 양평군, 여주시는 인구가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감소 지역이나 관심지역에 비해 여건이 양호한 편이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인구소멸 위험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안시현 2023)
    -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다 보니, 양평군, 여주시 같은 지역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체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2023년 2월)



출처: 이상호·이나경(2023)



## □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원을 관심지역까지 확대 필요성 제기

- 부산광역시 관심지역인 금정구는 당장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폭이 커 청년층을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차선영 2023)
  - 금정구는 24세 이하 젊은 계층이 모여드는 교육 도시이지만 교육이 모두 종료되는 25세 이상부터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25~44세 청년층 유출이 많음
  - 금정구는 젊은층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상인회, 지역대학 등과 역량을 모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마을 축제를 개최할 예정임
  - 또한, 고령화된 마을의 경우 고령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관심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함(김성수 2023)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임
  - 경기도에는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 7,431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연천군, 가평군만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인원이 80명밖에 되지 않음
  - 동두천시, 포천시 등 경기도 관심지역까지 해당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9월 윤창현 의원 등 10인은 전국 18개 관심지역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함(최일, 2023)
  -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18개 관심지역 역시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지역’이며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사전 예방적인 인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관심지역에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는 안을 발의함

## 2.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 관심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현행 정책체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관심지역을 확대 지정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심지역을 확대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행·재정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만 배분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기 전에 타 부처 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1. 분석 개요

-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 (장기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중기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1개 지표로 봄)를 종합 지수로 만든 후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열하여 지정함
  - 8대 지표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도록 표준화되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지역 여건이 양호함을 나타냄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 현황을 비교함
  - 먼저, 8대 지표를 표준화한 값을 기준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함
    - [표 4-1]의 산출식에 따라 8대 지표를 계산한 후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도록 표준화한 값을 활용함
  - 다음으로, 8대 지표의 절대적인 값을 기준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함
    - 표준화 값은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때 유용하나, 지표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값을 기준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함

【표 4-1】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 산출식

지표	산출식	자료	기간	방향 <sup>1)</sup>
연평균 인구증감률	$\left(\frac{2020\text{년 인구}}{2001\text{년 인구}}\right)^{1/19} - 1$ $\left(\frac{2020\text{년 인구}}{2016\text{년 인구}}\right)^{1/4} -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01~2020년 <sup>2)</sup> 2016~2020년	+
유소년 인구비율	$\frac{\sum_{2016}^{2020} 14\text{세 이하 인구}}{\sum_{2016}^{2020} \text{총 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6~2020년	+

지표	산출식	자료	기간	방향 <sup>1)</sup>
고령화 비율	$\frac{\sum_{2016}^{2020} 65\text{세 이상 인구}}{\sum_{2016}^{2020} \text{총 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6~2020년	-
조출생률	$\frac{\sum_{2015}^{2019} \text{출생아수}}{\sum_{2015}^{2019} \text{연앙인구수}} \times 1,000$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2019년	+
청년 <sup>3)</sup> 순이동률	$\frac{\sum_{2016}^{2020} \text{청년 순이동자수}}{\sum_{2016}^{2020} \text{청년 연앙인구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6~2020년	+
인구밀도	$\frac{\sum_{2016}^{2020} \text{총 인구}}{\sum_{2016}^{2020} \text{행정구역면적}}$	통계청, 「행정구역현황」	2016~2020년	+
재정자립도 <sup>4)</sup>	$\frac{\sum_{2016}^{2020} \text{자체수입}}{\sum_{2016}^{2020} \text{지자체 예산규모}} \times 100$	통계청, 「재정자립도」	2016~2020년	+
주간인구 <sup>5)</sup>	상주인구 + (주간유입인구 - 주간유출인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2018~2045)」	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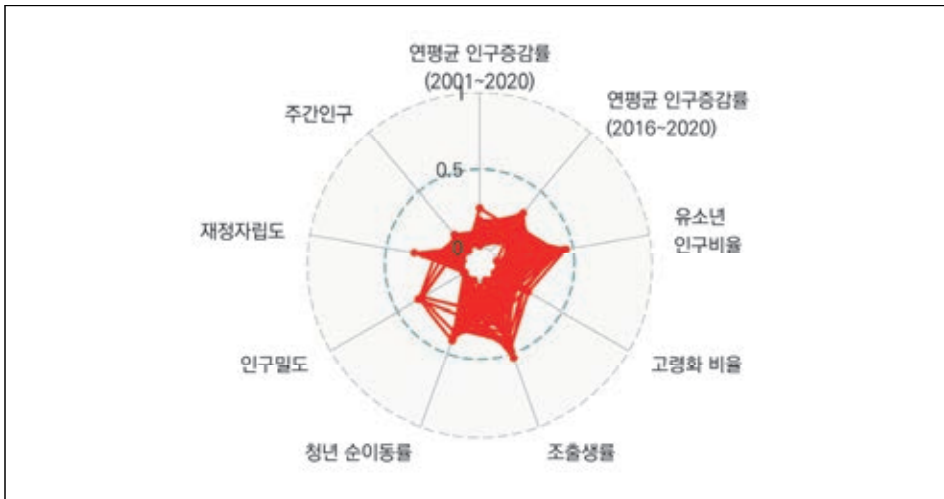
- 주: 1) 방향이 +면, 지표 값이 높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낮음 의미  
 2) 세종시의 경우 2012년에 출범하여 '12~'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사용  
 3) 「청년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 청년은 19~34세 의미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청 재정자립도 값으로 대체  
 5) 상주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주간유입·유출은 「국가교통DB」 전국지역간 목적 OD 자료에서 통근·통학·업무  
 통행 추출

## 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로 본 지역 현황

### □ 인구감소지역 현황

- [그림 4-2]의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영역에서 표준화 지표 값이 0.5보다 작으며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2 |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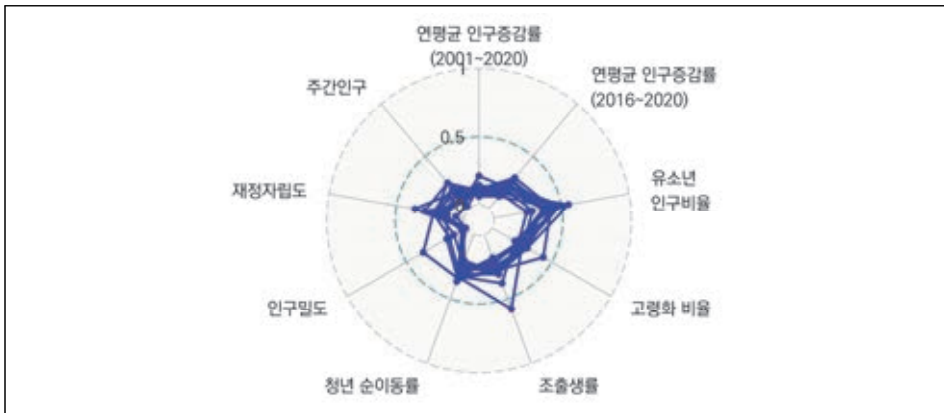
| 표 4-2 |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0.079	0.037	0.000	0.254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0.180	0.055	0.000	0.325
유소년 인구비율	0.238	0.098	0.000	0.453
고령화 비율	0.092	0.057	0.000	0.250
조출생률	0.186	0.112	0.000	0.528
청년 순이동률	0.198	0.079	0.000	0.410
인구밀도	0.021	0.077	0.000	0.398
재정자립도	0.096	0.061	0.000	0.317
주간인구	0.045	0.031	0.000	0.153

□ **관심지역 현황**

- [그림 4-3]의 관심지역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영역에서 표준화 지표 값이 0.5보다 작아 지역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구감소지역과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유소년 인구비율, 조출생률, 인구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최대값이 0.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별 관심지역 현황



|표 4-3|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관심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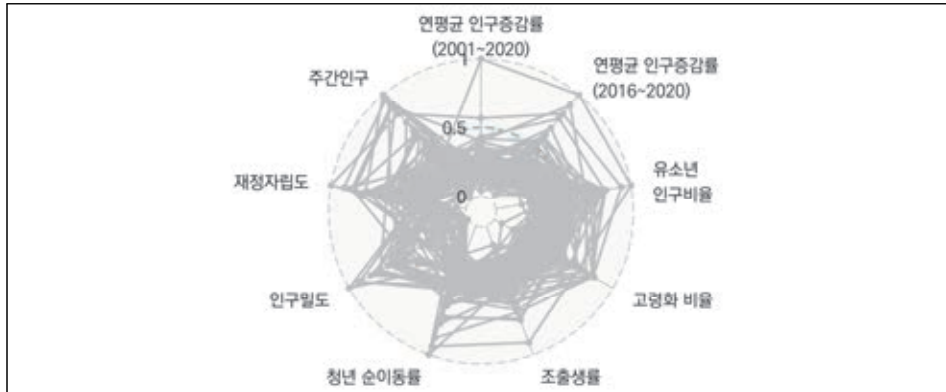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0.111	0.035	0.051	0.214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0.202	0.078	0.050	0.407
유소년 인구비율	0.401	0.108	0.059	0.552
고령화 비율	0.257	0.062	0.142	0.430
조출생률	0.279	0.095	0.110	0.580
청년 순이동률	0.306	0.064	0.202	0.482
인구밀도	0.089	0.147	0.000	0.571
재정자립도	0.195	0.073	0.061	0.363
주간인구	0.131	0.066	0.022	0.246

## □ 그 외 지역 현황

○ 그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이 아닌 지역)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 4-4]를 보면, 표준화 지표 값의 범위가 넓게 분포해 있으며 지표 값이 0.5 미만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22개 그 외 지역 중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을 포함한 17개 지역이 모든 영역에서 지표 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4-4]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그 외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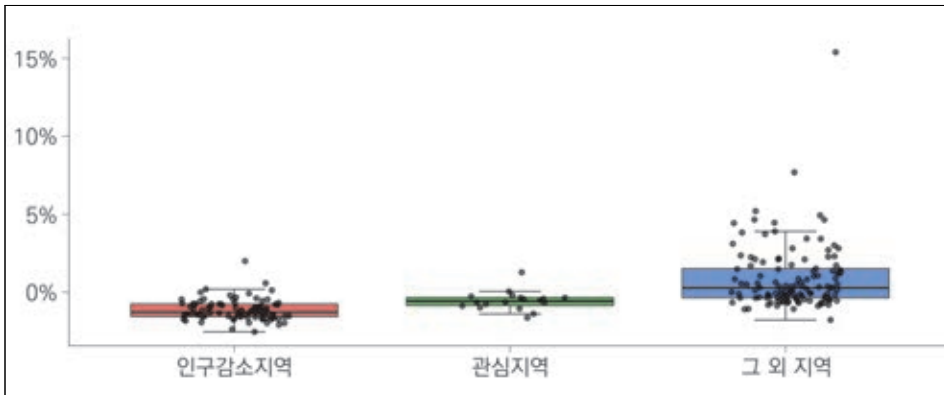
[표 4-4]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그 외 지역 현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0.193	0.117	0.043	1.000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0.307	0.166	0.048	1.000
유소년 인구비율	0.522	0.158	0.191	1.000
고령화 비율	0.447	0.168	0.063	1.000
조출생률	0.399	0.131	0.148	1.000
청년 순이동률	0.432	0.145	0.205	1.000
인구밀도	0.241	0.263	0.002	1.000
재정자립도	0.416	0.191	0.071	1.000
주간인구	0.328	0.207	0.015	1.000

### 3.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로 본 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장기적인 인구 변화 추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 -1.2%, 관심지역 평균은 -0.6%, 그 외 지역 평균은 0.9%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2.6~2.0% 사이이며 관심지역은 -1.7~1.3% 사이로 나타나며, 관심지역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5 |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 표 4-5 |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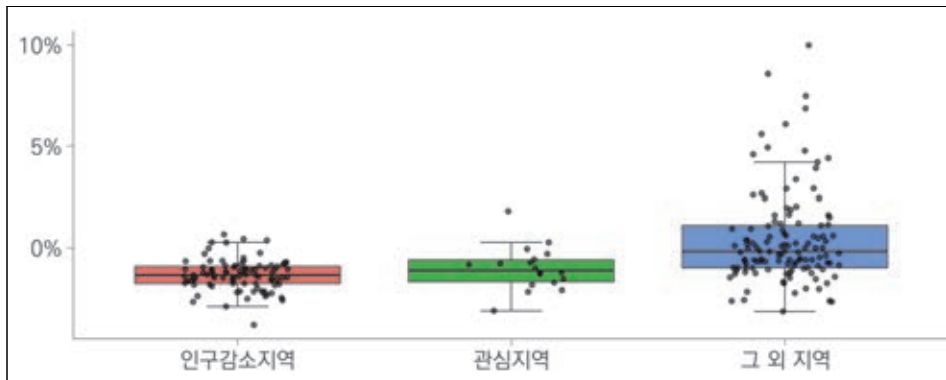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1.2	-0.6	0.9
표준편차	0.7	0.6	2.1
최소값	-2.6	-1.7	-1.8
최대값	2.0	1.3	15.4



-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최근 5년간 인구 변화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6~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 -1.3%, 관심지역 평균은 -1.0%, 그 외 지역 평균은 0.4%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2016~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3.8~0.7% 사이이며 관심지역은 -3.1~1.8% 사이로 나타나며, 관심지역 중에서도 중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6 |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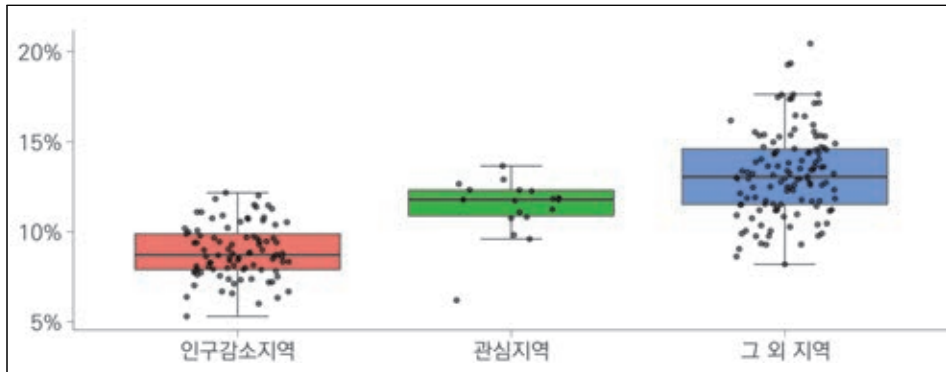
| 표 4-6 |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1.3	-1.0	0.4
표준편차	0.8	1.1	2.3
최소값	-3.8	-3.1	-3.2
최대값	0.7	1.8	10.0

- 인구감소지역 유소년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움
  - 유소년 인구비율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8.9%, 관심지역 평균은 11.4%, 그 외 지역 평균은 13.2%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유소년 인구비율은 5.3~12.2% 정도로 나타나며 관심지역은 6.2~13.7% 정도로 나타나, 두 지역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그림 4-7 | 지역 유형별 유소년 인구비율**



**| 표 4-7 | 지역 유형별 유소년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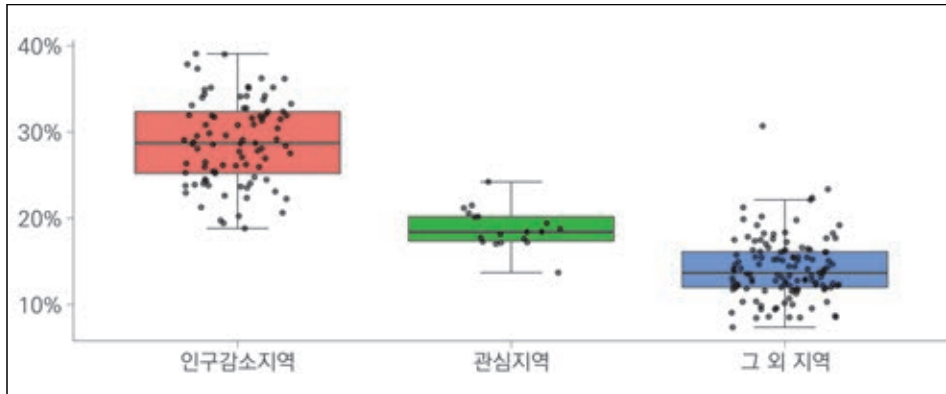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8.9	11.4	13.2
표준편차	1.5	1.6	2.4
최소값	5.3	6.2	8.2
최대값	12.2	13.7	20.4

- 인구감소지역이 고령화 비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나, 고령화 비율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비율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28.8%, 관심지역 평균은 18.8%, 그 외 지역 평균은 14.2%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고령화 비율은 18.8~39.1% 사이로 나타나며 관심지역은 13.7~24.2% 사이로 나타남

| 그림 4-8 | 지역 유형별 고령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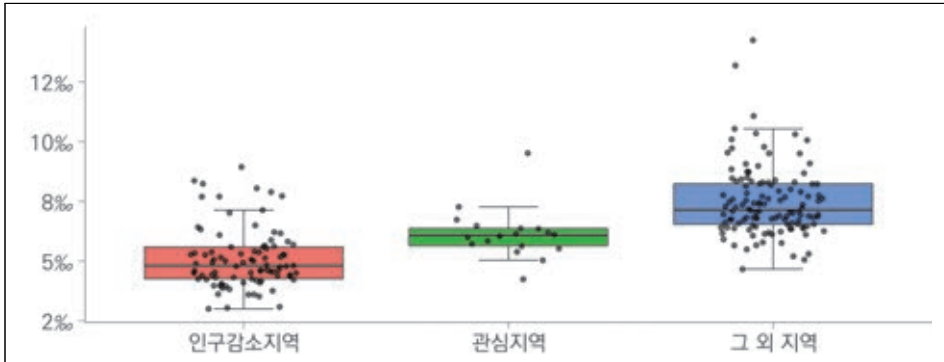
| 표 4-8 | 지역 유형별 고령화 비율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28.8	18.8	14.2
표준편차	4.8	2.3	3.5
최소값	18.8	13.7	7.4
최대값	39.1	24.2	30.7

- 인구감소지역 조출생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지만,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조출생률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조출생률 평균은 5.1%, 관심지역 평균은 6.1%, 그 외 지역 평균은 7.5%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조출생률은 3.0~8.9%, 관심지역은 4.2~9.5% 사이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조출생률 측면에서 특성이 비슷한 지역이 많음

|그림 4-9| 지역 유형별 조출생률



|표 4-9| 지역 유형별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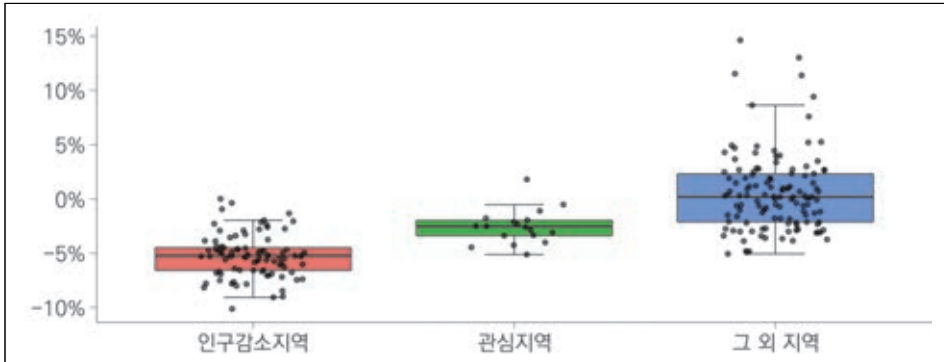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5.1	6.1	7.5
표준편차	1.3	1.1	1.5
최소값	3.0	4.2	4.7
최대값	8.9	9.5	14.2

○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청년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나, 관심지역, 그 외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순유출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순이동률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5.2%, 관심지역 평균은 -2.6%, 그 외 지역 평균은 0.6%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청년 순이동률은 -10.1~0.0% 사이의 값을 지니며 관심지역은 -5.1~1.8% 사이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지역의 경우 청년 순이동률은 -5.1~14.6% 사이의 값을 지녀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그림 4-10 |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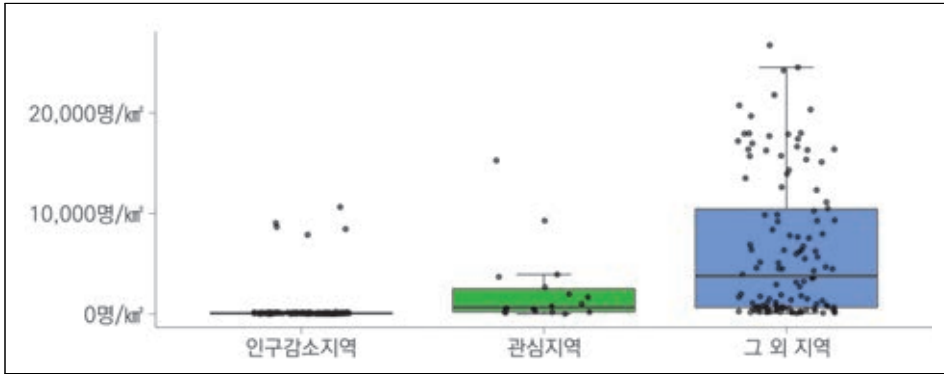
| 표 4-10 |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5.2	-2.6	0.6
표준편차	2.0	1.6	3.6
최소값	-10.1	-5.1	-5.1
최대값	0.0	1.8	14.6

-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인구감소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심지역이나 그 외 지역 중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 인구밀도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580.0명/km<sup>2</sup>, 관심지역 평균은 2,384.6명/km<sup>2</sup>, 그 외 지역 평균은 6,466.3명/km<sup>2</sup>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인구밀도는 21.1~10,640.2명/km<sup>2</sup>, 관심지역은 19.5~15,262.7명/km<sup>2</sup>, 그 외 지역 인구밀도는 78.4~26,720.0명/km<sup>2</sup> 사이의 값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밀도가 10,000명/km<sup>2</sup> 내외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심지역이나 그 외 지역 중 일부는 100명/km<sup>2</sup> 내외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림 4-11 | 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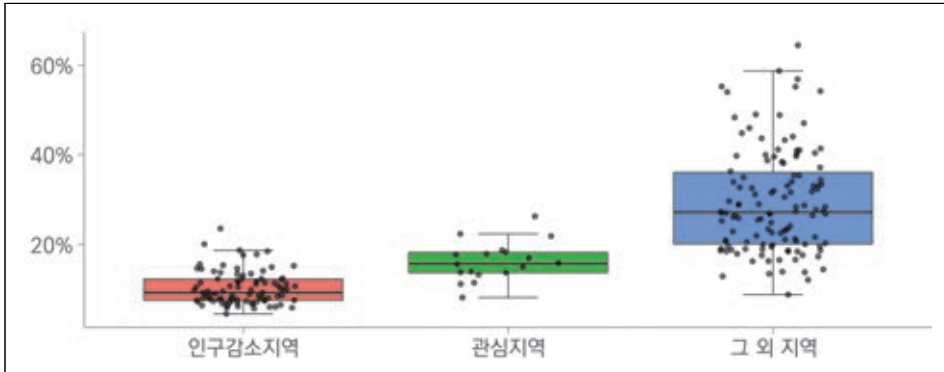
| 표 4-11 | 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단위: 명/km<sup>2</sup>)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580.0	2,384.6	6,466.3
표준편차	2,062.1	3,927.6	7,022.3
최소값	21.1	19.5	78.4
최대값	10,640.2	15,262.7	26,720.0

-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 재정자립도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10.3%, 관심지역 평균은 16.3%, 그 외 지역 평균은 29.5%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는 4.6~23.6%, 관심지역은 8.2~26.3%, 그 외 지역은 8.8~64.5% 사이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12 |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 표 4-12 |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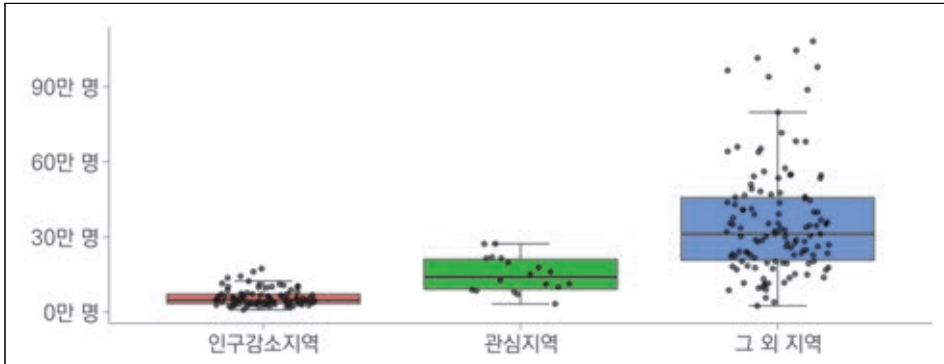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10.3	16.3	29.5
표준편차	3.7	4.4	11.4
최소값	4.6	8.2	8.8
최대값	23.6	26.3	64.5

○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주간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수준으로 주간인구가 적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간인구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5.8만 명, 관심지역 평균은 15.0만 명, 그 외 지역 평균은 36.0만 명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주간인구는 0.9~17.4만 명, 관심지역은 3.3~27.3만 명, 그 외 지역은 2.5~108.2만 명 사이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주간인구 수준으로 주간인구가 적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림 4-13 | 지역 유형별 주간인구



| 표 4-13 | 지역 유형별 주간인구

(단위: 만 명)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평균	5.8	15.0	36.0
표준편차	3.3	7.1	22.2
최소값	0.9	3.3	2.5
최대값	17.4	27.3	108.2

#### 4. 분석결과 종합

-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먼저 8대 지표의 표준화 값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을 비교하였음
  - 다음으로 8대 지표의 실제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비표준화 값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을 비교하였음
- 그러나 관심지역이나 그 외 지역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청년 순유출이 발생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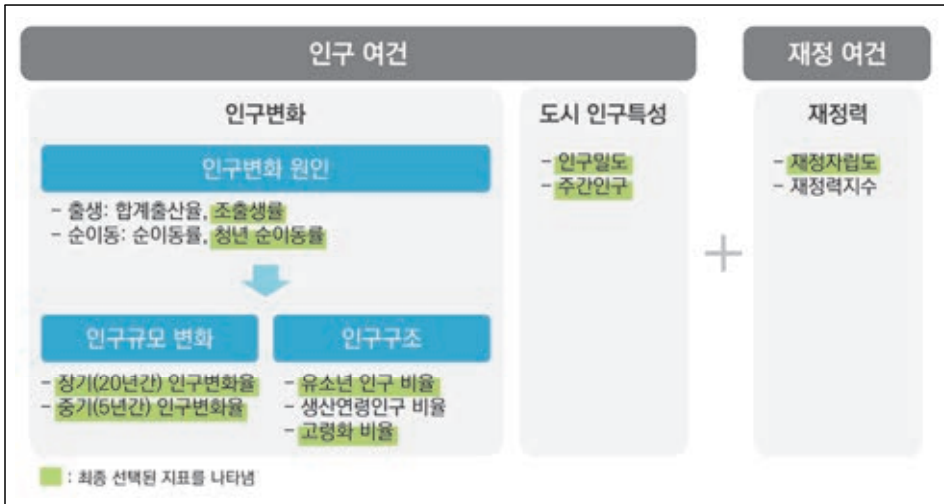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의 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2.6~2.0% 사이이며 관심지역은 -1.7~1.3% 사이로 나타나며, 관심지역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청년 순이동률은 -10.1~0.0% 사이의 값을 지니며 관심지역은 -5.1~1.8% 사이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심지역 중에서도 청년 순유출이 일어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지정 시 8대 지표를 하나의 종합지수로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열하여 열악한 순서대로 정책대상을 지정했기 때문임
- 즉, 현행 체계에서는 8대 특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른 여건이 양호하나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정도는 덜하지만, 인구감소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관심지역을 확대 지정할 경우 한정된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제3절 관심지역 선정 방향 및 기준(안)

#### 1. 관심지역 선정 방향

- 현행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지역 여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되었음
- 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려면,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그 외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닐 필요가 있음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하여 관심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수의 이론적 틀은 [그림 4-14]와 같이 인구 여건과 재정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14] 인구감소지수의 이론적 틀



출처: 김민영·이소영(2023)의 [그림 5-2]

## 2.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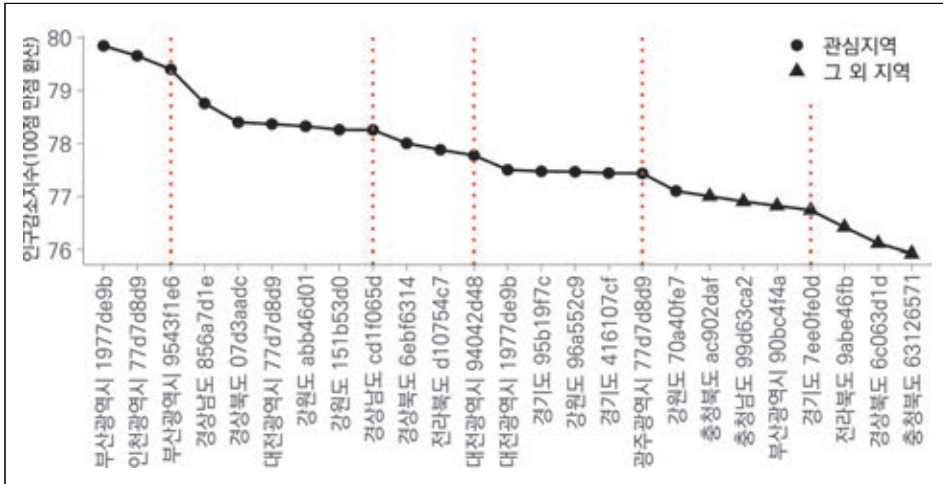
- 앞서 제시한 관심지역 선정 방향에 부합하는 세 가지 선정 기준 대안을 제시함
  -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그 외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녀야 하며,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한 관심지역 선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첫째, 인구감소지역 선정 방법과 같은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이후 인구감소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점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함
  - 이는 정량 수치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세 유형의 지역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다만,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 수를 사전에 정할 수 없음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먼저 결정한 후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을 고려하여 관심지역을 선정함
  - 제한된 기금액을 활용하여 지역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먼저 정하고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관심지역을 선정함
  - 재정 지원 한계를 고려하여 관심지역 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어떻게 결정할 지에 따라 관심지역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셋째,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관심지역을 선정하되, 그 중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함
  - 인구감소지역보다 여건은 나쁘지 않지만 재정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줌
  - 현행 지원체계에서 관심지역을 별도 지정하여 재정 지원하는 이유를 관심지역 선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구감소지수 외에 인구감소지표를 추가 활용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방법이 복잡함

### 3.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결과

#### □ 첫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첫 번째 선정 기준(안)은 인구감소지역 이후 인구감소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점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하는 안임
- [그림 4-15]는 현행 관심지역을 포함하여 25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수 순으로 나열한 도표임
  - 범례의 관심지역은 현행 관심지역을 나타내며, 그 외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냄
- 인구감소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을 살펴보면 5개 지점이 나타나며, 각 지점에 따른 관심지역은 아래와 같이 선정될 수 있음
  - 첫 번째 지점까지 관심지역을 선정한다면, 3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두 번째 지점까지 관심지역을 선정한다면, 9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세 번째 지점까지 관심지역을 선정한다면, 12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네 번째 지점까지 관심지역을 선정한다면, 17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다섯 번째 지점까지 관심지역을 선정한다면, 22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음

[그림 4-15] 첫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이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수의 약 20%(현행 기준 18개 내외)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현재의 방안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 두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두 번째 선정 기준(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먼저 결정한 후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을 고려하여 관심지역을 선정하는 안임
- 관심지역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예산과 지역별 배정액은 [표 4-14]와 같음
  - 최소배분액이 2022년 12억 원에서 2023년 16억 원으로 상향되고 2025년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최대배분액 역시 2022년 23억 원에서 2023년 30억 원, 2024년 36억 원, 2025년 40억 원으로 지속 상향 조정됨
  - 이는 최소배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지원하여 다년도 중점사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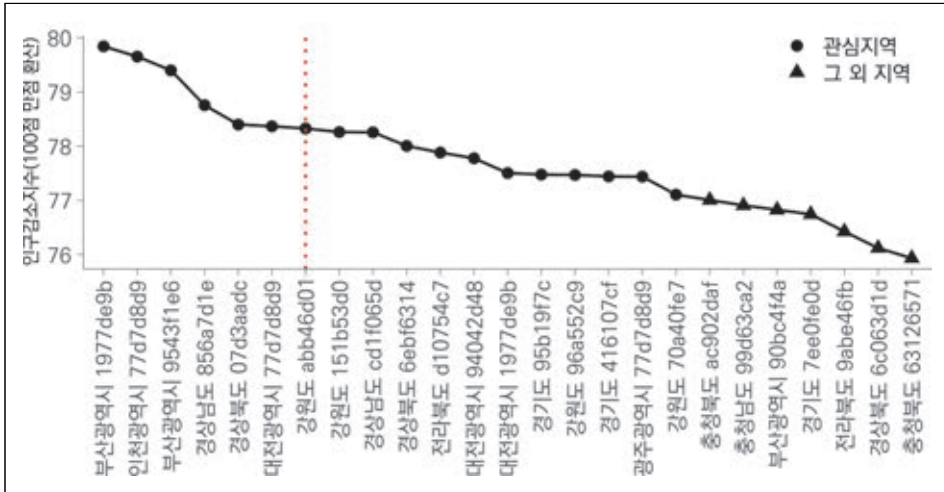
**| 표 4-14 |** 관심지역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예산 및 배정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예산	281.25억 원	375억 원	375억 원	368억 원
지역별 배정액	12~23억 원	16~30억 원	16~36억 원	18억 원 혹은 40억 원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2024년 512개 기금사업 평균 투입액이 17.6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근거하면 2025년 18억 원을 배정받는 관심지역은 평균적으로 기금사업 1개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에 그침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18억 원으로는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음
- 한 예시로, 관심지역에서 기금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3개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7개 관심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심지역에서 기금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지역당 약 53억 원(=17.6억 원 × 3개 사업)이 필요함
  - 관심지역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예산인 368억 원을 53억 원으로 나누면, 약 7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7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선정하면 [그림 4-16]과 같음
  - 범례의 관심지역은 현행 관심지역을 나타내며, 그 외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냄
  - 7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선정한다면 빨간색 점선이 표시된 지역까지 해당됨
-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림 4-16 | 두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 세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세 번째 선정 기준(안)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관심지역을 선정하되, 그 중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하는 안임
-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은 [표 4-15]와 같으며,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평균은 10.30%, 최소값은 4.50%, 최대값은 23.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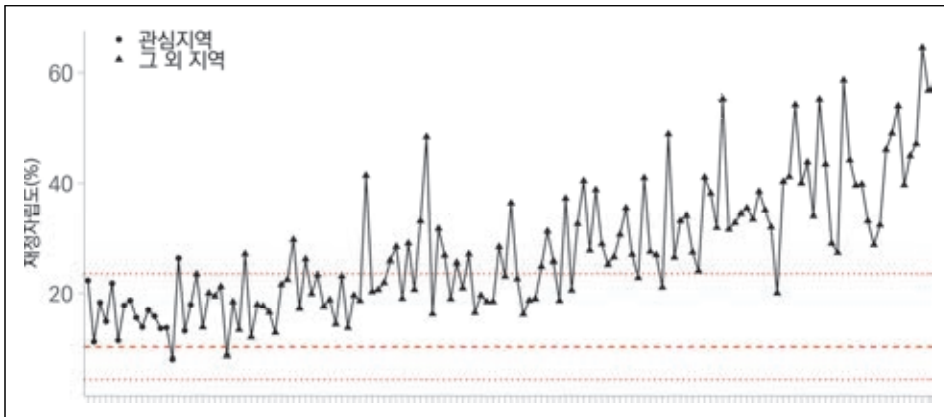
| 표 4-15 |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단위: %)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인구감소지역	10.30	4.50	23.60
관심지역	16.30	8.19	26.30
그 외 지역	29.50	8.84	64.50

- [그림 4-17]은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자립도 현황을 나타냄
  - 가로축은 인구감소지수 기준 내림차순으로 지역을 나열한 것이고 세로축은 5년간 재정자립도를 나타냄
  - 빨간색 긴 점선은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평균인 10.30%를 나타내며, 빨간색 짧은 점선은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최소값 4.50%, 최대값 23.60%를 나타냄
  - 재정자립도가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열악한 지역은 2개이며,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범위에 들어오는 지역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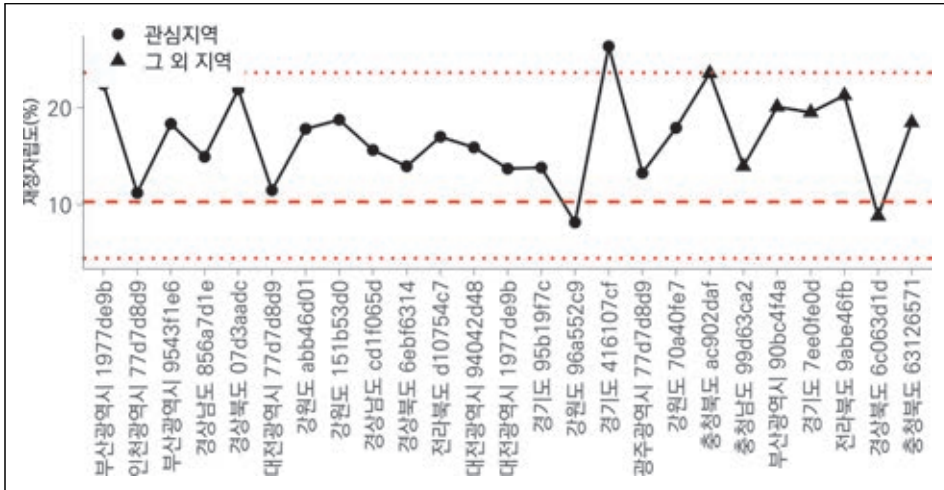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와 재정 여건이 인구감소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함께 고려하면 관심지역으로 15개 지역이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18]은 [그림 4-17]을 확대하여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 25개를 나타낸 것임
  -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내 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전까지 포함되는 15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이 방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재정 여건이 비슷하지만, 인구감소지수 기준으로 전반적인 여건이 더 나아 관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음

[그림 4-18] 세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 제4절 소결

### 1.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외에도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인구가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보다 여건이 양호하지만, 인구소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부산광역시 관심지역인 금정구는 당장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폭이 커 청년층 유출 방지가 시급한 상황임
- 관심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현재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만 배분되므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기 전 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행·재정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적용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관심지역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관심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본 장에서는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의 표준화 값을 기준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절대 값을 기준으로 실제 의미를 해석했음
-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그 외 지역을 비교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청년 순유출이 발생한 지역이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2.6~2.0%이며, 관심지역은 -1.7~1.3%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청년 순이동률은 -10.1~0.0%이며, 관심지역은 -5.1~1.8%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관심지역을 확대 지정할 경우 한정된 예산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3.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특성 및 결과는 [표 4-16]과 같음
- 대안 1은 인구감소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선정되는 지역 수를 사전에 정할 수 없음
- 대안 2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가능한 관심지역 수를 먼저 결정한 후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으로 관심지역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 한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 생길 수 있음
- 대안 3은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을 고려하되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재정 여건이 나은 지역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하여 재정 지원의 이유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인구감소지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표를 활용하여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음
- 한편, 인구감소지역 수의 약 20%(현행 기준 18개 내외)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현재의 방안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표 4-16 |**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특성 및 결과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 이후 인구감소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점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 지역 수를 먼저 결정한 후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을 고려하여 관심지역을 선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을 고려하되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재정 여건이 나은 지역 직전까지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함</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 지원 한계를 고려하여 관심 지역 수를 결정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지역을 별도 지정하여 재정 지원하는 이유를 관심 지역 선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 수를 사전에 정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수 기준으로 여건이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음</li> <li>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가능한 관심 지역 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관심지역 선정 결과가 달라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수 외에 인구감소 지표를 추가 활용하여 방법이 복잡함</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격히 하락하는 지점에 따라, 3개, 9개, 12개, 17개, 22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개</li> </ul>

주: 관심지역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지역은 '제3절 관심지역 선정 방향 및 기준(안)'의 '3.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결과' 참고

# 제 5 장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 방안 제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연계 지원 전략

제3절 제도 개편 방안



# 05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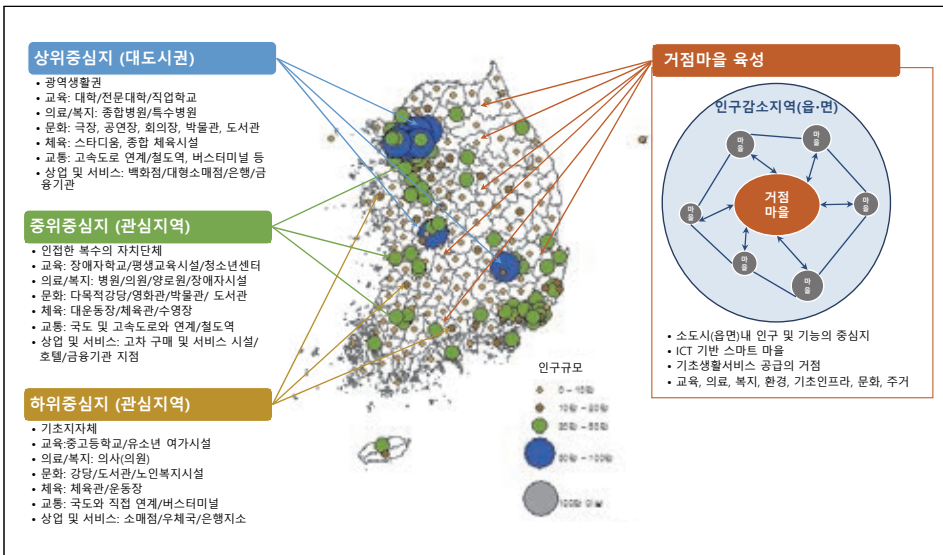
## 제1절 기본방향

### 1. 중위중심지로서 관심지역 지원

####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댐 역할 필요

-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별로 시책이 마련되고 있어, 주변 지역과 연계한 발전 전략이 부족함

[그림 5-1] 대도시-중소도시-인구감소지역 위계별 연계구조



출처: 이소영·김상민·최민정(2017)의 [그림 5-3] 재구성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어, 이를 저지할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위중심지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도시가 인구 규모별로 상위중심지, 중위중심지, 하위중심지로 구성 된다고 볼 때, 상위중심지는 대도시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위중심지가 인구감소지역과 연계하여 인구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인구규모, 주야간 인구 비율, 인근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관심 지역을 중위중심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에는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없음
  - 따라서,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에 근거하여 선정된 관심지역을 단순히 중위 중심지로 설정해서는 안 되며, 추가 분석이 필요함
  - 일본 사례를 보면, 인구 담 역할을 하는 정주자립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심시 인구가 5만 명 이상, 주야간 인구 비율이 1 이상이어야 하며, 근린 시정촌과 사회·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
  - 관심지역은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나은 편이지만, 모든 관심지역이 인구 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인구규모, 주야간 인구 비율, 인근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위중심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관심지역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 관심지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2-13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지만,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만 적용됨
- 지역 위계별 중심지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심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관심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대도시 지역을 연계한 발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연계 지원 전략

### 1. 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 □ 중위중심지 기능 강화로 위계별 인구감소지역 지원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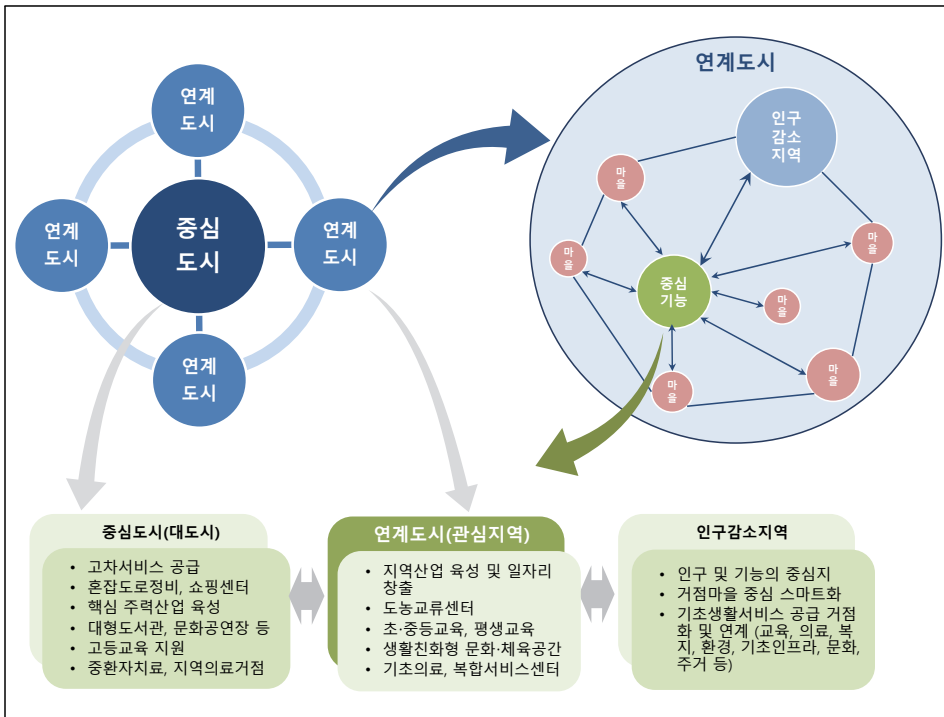
- 현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은 시·군·구별로 지원되고 있어, 정주지역의 위계별 지원 전략이 부재함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개별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사업을 투자하고 있음
- 관심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부재로, 관심지역을 포괄하여 중장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관심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위중심지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고려한 지역 간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다만, 모든 관심지역이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규모, 주야간 인구 비율, 인근 지역과의 관계성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에서는 시·군·구 지역 내 기초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인구 및 기능의 중심지를 육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시책을 각자 수립하고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기본계획과 시책 검토 결과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
- 일부 시·도는 관심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연계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한 사례는 매우 적음

- 소액의 기금사업만 투입되는 현재의 관심지역 지원체계로는 중위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구 유출 방지 담 육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역 상호연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그림 5-2 |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간 상호 연계방안



출처: 이소영·김상민·최민정(2017)의 [그림 5-6] 재구성

- 현행법상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관심지역과 관심지역만 존재하는 시·도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관심지역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는 연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관심지역 행·재정적 지원 방안

### □ 관련법 상 인구감소지역 특례 준용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상의 규정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적용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관심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이상의 관련법이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운용될 수밖에 없음

### □ 관심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부터 제28조에서 규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는 대부분 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각 특례는 개별법이 규정한 관계기관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지역으로의 특례 확대 여부는 관계기관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다만, 인구감소지역 특례 부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차이를 인정하여, 차등적인 특례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특례의 상세 규정에 따른 관심지역 특례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

**| 표 5-1 |** 관심지역에 대한 보육·교육 분야 특례 적용 여부

분야	주체	특례사항	특례
보육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적 설치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b>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b>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b>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
교육	교육감	<b>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유치원, 학교 시설·설비·교육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
	교육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분교를 폐교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
	시·군·구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 가능	○
	교육부장관	<b>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
	교육감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
	교육감	<b>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	○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

분야	주체	특례사항	특례
교육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및 시설·설비 확보 등에 필요한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하여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	○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 보육 및 교육 특례의 경우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특별히 재정적 특례가 주어지며, 교육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각 특례를 관심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특례 규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므로, 현행법상 제도 지원이 가능함
- 특별법 제23조에 규정된 의료기반 확충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지원책이므로, 의료 분야 특례 또한 관심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함

| 표 5-2 | 관심지역에 대한 의료 분야 특례 적용 여부

분야	주체	특례사항	특례
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	○
	시·도지사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섬 지역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등을 규정한 주거 및 교통 분야 특례도 관심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함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는 특례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므로, 관심지역으로 확대되더라도 관련 령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표 5-3 |** 관심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분야 특례 적용 여부

분야	주체	특례사항	특례
주거·교통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	<b>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

-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도 강제 규정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지원책이므로 관심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 외국인 특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심지역에도 법무부 관련 시책에 따라 확대 적용이 가능함

| 표 5-4 | 관심지역에 대한 문화·외국인·노후시설·산업단지 분야 특례 적용 여부

분야	주체	특례사항	특례
문화	-	인구감소지역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
	-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b>대통령령으로</b> 달리 정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
	문체부장관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
외국인	법무부장관	<b>대통령령에 따라</b>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	○
	법무부장관	민원업무처리 접근성 보장, 사회통합 교육·지원, 내국인·외국인 상호이해 증진 등 시책 강구	○
노후·유희 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 상태 등 관리 실태 주기적 점검	○
	지방자치단체	노후·유희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 확대 가능	○
산업단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임대료 감면, 판로개척,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고용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가능	○

## 제3절 제도 개편 방안

### 1. 관심지역 지정 방안

####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준용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정의되며, 지정 기준도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인구감소 위기가 높은 지역 순으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 관심지역 지정 기준도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함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22대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10일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 정의를 준용하는 법 체계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규정하는 개정안임
  - 의안번호 제231호가 제안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안은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제안 되었음

- 이 법률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표 5-5】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의안번호 제231호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기준을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 등에 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

【표 5-6】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지표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 □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연계 전략 수립

-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상호연계 방안은 관련 전략 수립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음
- 현행법 체계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만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관심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수립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첫째, 관심지역도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을 연계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함
  - 둘째, 관심지역이 수립한 시·군·구 기본계획을 관할 시·도가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만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을 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가도 관련 기본계획에서 관심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상호연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관련법 개정안

-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해, 관심지역의 법정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려면 현행법 체계상 전반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주요 법률 조문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인구감소지역”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 등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해야 함
  - 기본계획의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일컬으며, 이를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문화해야 함

| 표 5-7 | 인구감소관심지역 책무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p>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 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p> <p>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의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p>	<p>① <b>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 등’이라 한다)</b>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b>인구감소지역</b> 등에 속하는 시·군·구(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b>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제5조와 제6조 제1항에서와 같다</b>)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b>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제5조와 제7조제1항에서와 같다</b>)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p> <p>② 국가는 <b>인구감소지역</b> 등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표 5-8 | 인구감소관심지역 계획수립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6조 시군구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가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 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군·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① <b>인구감소지역</b> 등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가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 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군·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6조 시군구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p>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p>	<p>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b>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말한다</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p>

-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시·군·구 기본계획이라고 약칭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도 시·군·구 기본계획이라고 약칭될 수 있음
- 제7조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제1항 조문을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변경해야 함
-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문도 마찬가지로 변경해야 함
- 다만, 관심지역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하는 관련 위원회 구성의 경우, 제9조에 규정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시·군·구 위원회 및 시·도 위원회로 약칭되므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지칭함을 명시해야 함

표 5-9 |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9조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3. 관심지역 특례 부여 방안

####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적용

-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개별법 및 관계 행정 기관장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관심지역에도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 인구감소가 현저히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소 방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 인구감소지역 특례 부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차이를 인정하여, 차등적인 특례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서는 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수단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실제 지원 정도나 수준은 법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운영하면 될 것임
- 따라서 현행법이 제안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특례로 변경하여 관심지역에도 특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음

#### □ 관련법 개정안

- 주요 법률 조문의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표 5-10 |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p>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b>인구감소지역</b>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b>인구감소지역</b> 등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b>인구감소지역</b> 등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p>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행정안전부장관은 <b>인구감소지역</b>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21조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표 5-11】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21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b>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 등' 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b> 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4. (생략)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b>인구감소지역 등</b> 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b>인구감소지역 등</b> 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③ <b>인구감소지역 등</b> 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구분	기존안	변경안
제23조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및 지원	<p>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p> <p>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⑥ (생략)</p>	<p>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p> <p>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b>인구감소지역 등</b>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⑥ (현행과 같음)</p>



# 참고문헌

## [ 논문 ]

- Hattori, Keiro, Kiyonobu Kaido, and Mihoko Matsuyuki. (2017). “The Development of Urban Shrinkage Discourse and Policy Response in Japan.” *Cities* 69:124–32. <https://doi.org/10.1016/j.cities.2017.02.011>.
- 宮下 量久. (2018). “地方創生を踏まえた地方財政の展望.” *日経研月報*.
- 立岡 健二郎. (2023). “過疎法の意義を問い直す.” *J R レビュー* 5 (108): 77–98.

## [ 연구보고서 ]

- 김민영·이소영. (2023).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2023-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호·이나경. (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 이소영·김상민·최민정. (2017).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7-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계획 ]

- 閣議決定. (2014).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と「総合戦略」の全体像等.”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20141227siryou1.pdf>.
- 閣議決定. (2019).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令和元年改訂版)及び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概要).”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r1-12-20-gaiyou.pdf>.
- 閣議決定. (2020).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20 改訂版).”
- 閣議決定. (2023).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 改訂版).
- 國家發展委員會. (2018).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核定本).

國家發展委員會. (2019). 地方創生國家戰略計畫(National Strategic Plan for Regional Revitalization)슬라이드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202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경기도. (2023).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경상남도. (2023).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경상북도. (2023).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2023).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전라북도. (2023).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 고시·공고 ]**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403호)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관계부처 합동. (2023).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 **[ 뉴스기사 ]**

김성수. (2023).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만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요청”. 산업일보, 2023년 7월 19일. <https://kidd.co.kr/news/233401>.

안시현. (2023). “양평·여주도 인구소멸 위험단계… 정부지원 없어 대응에 한계”. 중부일보, 2023년 10월 4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4021>.

차선영. (2023). “교육도시 금정구도 '지역소멸 위기'…대응 방안은?” LG헬로비전, 2023년 1월 20일.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54175>.

## [ 웹사이트 ]

일본 지방창생 웹사이트. <https://www.chisou.go.jp>.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https://www.soumu.go.jp>.

일본 히메지시 웹사이트. <https://www.city.himeji.lg.jp/shisei/0000006495.html>.

## [ 그 외 문헌 ]

令和3年度第1回過疎問題懇談会. (2021). “過疎対策の概要について.”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内閣府地方創生推進室. 2022. “地方版総合戦略の策定・効果検証のための手引き(令和4年 12 月版).”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21). “地方版総合戦略の策定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内閣府地方創生推進室. (2020). “「地方版総合戦略」の策定について.”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3). “令和5年度小さな拠点の形成に関する実態調査調査結果.”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chiisanakyoten/chousa/saishin/pdf/r5jittaichosa.pdf>.

総務省自治行政局過疎対策室. (2022). “過疎関係市町村都道府県別分布図.”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7380.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07380.pdf).

정책연구 2024-06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저 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행 일 2024년 7월 3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